

〈일반논문〉

칸들의 선물, 황제의 은혜* : 淸 初期 滿·蒙 관계와 禮物

이 선 애 **

〈목차〉

- I. 머리말
- II. 칸들의 선물: 天命 年間 만주-몽골의 예물교환
- III. 天聰 年間 이후 예물교환의 양상
- IV. 황제의 은혜: 崇德 年間 이후 進貢과 回賜
- V. 맺음말

[국문초록]

누르하치 시기 만주 한(han, 汗)와 몽골 왕공이 대등한 관계에서 교환한 예물들은 이후 흥타이지가 내몽골을 ‘外藩蒙古’로 만드는 과정에서 進貢品으로 바뀌게 되었다. 天聰5년 경부터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거나 받지 않고 주기만 하는 비대칭적 예물교환의 관례가 현저해졌지만 흥타이지는 경제적 가치가 높고 당장 필요한 비단과 의복, 보석 등의 물품은 수령했다. 그리고 만주 정권이 명과 조선으로부터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2022년도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사업-한국학 학술대회 지원’을 통해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 ‘동유라시아 물품의 복합성: 문명과 문화의 경계를 허물다’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6A3A01054082).

** 경상국립대학교 역사교육과 부교수

터 직간접적으로 입수한 물자들은 하사와 교역의 방식으로 내몽골 왕공들에게 재분배되었다. 이처럼 후금-청 초기 몽골 부족들이 만주 황제에게 바치는 진공품에는 경제적 가치가 내재했으며 17세기 만주-몽골-조선-명의 물품들은 다양한 방식과 통로로 순환했다. 崇德 원년 이후 마련된 조공 예물에 대한 초보적인 규정들은 순치 연간을 거쳐 제도적인 면모를 갖추기 시작해 건륭 연간에 완비된 제도로 정립되었다. 入關 前 만주와 몽골의 관계에서 형성된 관례와 규정들이 청대 외번 조공·조공 제도의 기원이 된 것이다.

□ 주제어

예물교환, 외번몽고 왕공, 進貢, 償賜, 朝覲年班

I. 머리말

사람들은 유대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기 위해 혹은 화해하기 위해 선물을 교환한다. 선물을 주는 행위가 일방적일 경우 상호 관계는 깨어지기 쉽다. 선물 교환에는 일종의 ‘의무’가 내재해 선물을 받고도 답례하지 않는 것은 무례함으로 여겨지며 다툼을 유발한다. 또 받아야 하는 의무도 주어야 하는 의무 못지않게 강제적이다. 선물을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무시와 적대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¹⁾ 그러나 높은 지위에 있

1) 마르셀 모스, 이상률 옮김·류정아 해제, 『증여론』, 한길사, 2016, 53쪽; 159-160쪽. 마르셀 모스는 선물 교환은 자발적인 형식으로 행해지지만 실제로는 엄격하게 의무적이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적이거나 공적인 싸움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전체적인 급부체계(système de prestation totale)’라고 불렀다.

는 사람의 경우 선물을 받지 않는 행위가 용인되기도 하며 때로는 받은 물건에 대해 답례하지 않거나 충분히 답례하지 않는 것은 증여자에 대한 ‘중속’을 의미한다. 즉 비대칭적인 예물 증여는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재생산한다.²⁾

국가들 사이에서도 의례적 교환은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갖는다. 전근대 조공과 책봉 관계에서 행해진 주변국의 進貢과 황제의 回賜는 국가 간 의례적 교환 행위가 고도의 정치·외교 질서로 발전된 것이다. 조공-책봉 체제 정점에 있는 황제가 주변국으로부터 받은 것보다 후한 예물을 하사하는 소위 ‘厚往博來’는 국가 간 비대칭적 예물교환을 의미한다. 받은 것보다 더 주는 행위는 황제의 덕과 은혜를 명시적으로 드러냈으며 황제의 후한 선물을 받음으로써 주변국은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고 臣服하였음을 표했다.

신생 만주 정권과 내몽골 부족들이 타협과 반목을 반복한 시기에 양자의 선물 교환은 상호 평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만주 정권의 역량이 내몽골 부족들을 압도한 무렵부터 예물교환의 목적과 방식이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예물을 주고받는 형식과 왕래한 물품의 종류와 규모에서도 드러난다. 후금-청 정권이 몽골 부족들과 주고받은 예물은 만주와 몽골의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반영하므로 예물교환 양상은 청 초기 만몽 관계의 역사적 변화를 규명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동시에 만주와 몽골 사이의 물질 교환 양상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당시 정치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Dorothea Heuschert-Laage, “From Personal Network to Institution Building: The Lifanyuan, Gift Exchange and the Formalization of Manchu-Mongol Relations”, *History and Anthropology*, Vol.25, No.5, 2014, p.656.

2) 李治國, 『清代藩部賓禮研究-以蒙古爲中心』, 內蒙古大學出版社, 2014, 106쪽 (美)閻云翔, 李放春·劉瑜 譯, 『禮物的流動』, 上海人民出版社, 2000, 242쪽 재인용).

李治國은 청조의 賓禮 시스템을 신체의례, 예물교환, 예제질서 등으로 구분하고 몽골과의 예물교환이 점차 비대칭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통해 그것이 갖는 실질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분석했다.³⁾ 그에 따르면 崇德 원년을 기점으로 청조는 몽골과 교환하는 예물의 가치에 현격한 차이를 두었다. 청 황제는 몽골 왕공들의 진공품 일부만 취하고 回賜는 더 풍부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예물교환은 청 조정이 의도한 정치적인 목적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청조는 비대칭적 예물교환으로 인해 물질적 이익을 잃었지만 藩部 수장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했다. 李治國은 청 후기 조정이 재정 위기에 빠져 '厚往博來'적인 예물교환 정책을 지속할 수 없었지만 명 예성 예물을 발전시켜 일정 정도 지출을 줄이면서도 번부의 지지와 번부에 대한 예물교환 통제 전략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清實錄』과 달리 만문과 몽문 기록에는 진공한 사람과 진공한 물품, 물품의 수령 여부, 수령한 물품과 거절한 물품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니콜라 디 코스모(Nicola Di Cosmo)는 홍타이지가 몽골 왕공들이 선물한 물품을 모두 수령하지 않고 일부만 받거나 모두 돌려보낸 행위에 주목했다.⁴⁾ 그는 만주 한과 몽골 왕공 사이의 선물 교환에서 어떤 사람의 선물이 거절되었는지가 조공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단서라고 지적했지만 예물을 중심에 두고 그 의미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다.⁵⁾

3) 李治國, 『清代藩部賓禮研究-以蒙古爲中心』, 內蒙古大學出版社, 2014, 6-8쪽; 같은 책, 106-152쪽.

4) Nicola Di Cosmo and Dalizhabu Bao, *Manchu-Mongol Relations on the Eve of The Qing Conquest*, Brill, 2003, pp.173-174.

5) 최근 陳昱彤이 청대 티베트의 年班 貢品이 갖는 정치적 상징과 의미를 고찰했다. 그는 달라이 라마와 판첸 어르더니가 청 황제에게 보낸 年班 貢品을 종교용품, 티베트산 방직품, 약재와 식품, 생활용품 및 특수 공예품 등으로 분류해 고찰했다. 그는 청대 중앙과 티베트의 빈번한 교류 속에서 유통된 貢品이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는 정치적 상징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물품들은 주로 달라이라마와 판첸 어르더니의 청 황제에 대한 공경, 축수, 감격의 정서를 담으면서 청에 대한 티베트의

도로테아 호이셰르트(Dorothea Heuschert)도 만주 황제와 몽골 수장들이 주고받은 예물에 주목했다.⁶⁾ 도로테아도 예물 자체보다는 예물교환의 양태 변화와 정치적 의미에 착목했다. 그는 특히 入關 이후 순치 연간의 변화에 주목했는데 순치3년(1646) 이후 이번원이 작성한 문건에 진공품과 회사품이 함께 열거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도로테아에 따르면 청조가 북경으로 천도한 이후 청 황제는 더 이상 선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는 존재'로 자신의 지위를 재규정했다.

宋瞳은 『清朝前期理藩院滿蒙文題本』의 관련 기록을 분석하여 순치연간 宴賚制度를 분석했다.⁷⁾ 宋瞳은 『大清會典』과 『通典』 등에는 과도기적 제도와 변화 양상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회전』과 『통전』만으로는 청대 宴賚制度의 전모를 밝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원만문제본을 적극 활용하여 宴賚가 완정한 제도로 정착되기 이전 순치 시기의 宴賚 장소와 규모, 朝覲·償賜의 목적과 변화 등에 대해 고찰했다.

도로테아와 宋瞳은 모두 청대 朝覲과 宴賚·償賜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순치 연간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순치 연간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제도화 이전에 형성된 관례, 그리고 이 관례의 변화가 이후 제도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청대 外藩蒙古 朝覲·宴賚制度의 특질은 入關 前 만주와 몽골의 정치적 관계에서 형성된 관례에 기인한다. 만주와 몽골의 관계가 변화하면서 관례 또한 변형되었고 이후 정례화되고 제도화되는 장기적 과정이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만주 정권이 내몽골에 대한 정치·군사적 우위를 장악하고 의례적인 규정

정치적 귀속과 공동체 의식을 표현했다고 보았다. 陳昱彤, 「升平累洽: 論清代西藏地方年班貢品的政治內涵」, 『中國藏學』 2022年 第2期.

6) Dorothea Heuschert-Laage, "From Personal Network to Institution Building: The Lifanyuan, Gift Exchange and the Formalization of Manchu-Mongol Relations", *History and Anthropology*, Vol.25, No.5, 2014.

7) 宋瞳, 「順治朝清廷宴賚蒙古王公制度略論」, 『西域歷史語言研究集刊』 第7輯, 2014.

과 절차들을 만들어낸 홍타이지 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명말 청초 만주와 몽골의 관계는 복잡다단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겪었다. 만주 한과 몽골 수장이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 양자가 주고받은 선물은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후금-청과 몽골의 관계가 종주와 외번의 관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예물교환의 성격과 방식도 차츰 변화했고 입관 이후 朝覲年班과 朝貢·宴賚制度로 자리 잡게 된다. 청대 조공책봉과 조근제도는 중국왕조의 전통이라는 외피를 썼을지라도 그 대상을 外藩蒙古로 특정하면 입관 전 만주정권과 몽골의 관계에 기원해 발전했다는 특징을 갖는다.⁸⁾

본고에서는 入關前 천명 연간부터 승덕 연간까지 만주 한-황제와 몽골 수장들이 주고받은 예물의 정치·경제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滿文老檔』과 『內國史院檔』, 『內祕書院蒙文檔案』 등 청 초기 사료에 등장하는 진공과 회사 기록을 통해 시기에 따라 어떤 예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교환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특징과 함의를 추출해보고자 한다. 또한 예물의 수령 여부와 예물의 수량·품목이 갖는 정치·경제적 의미는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만주와 몽골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17세기 동유라시아 세계에 예물이 담지한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의 관행과 변화가 이후 清代 朝覲年班과 宴賚制度에 미친 영향을

8) 청대 조근제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건륭 연간 外藩 宴禮에 관한 구범진의 연구가 있다. 구범진, 「清 乾隆 연간 外藩 宴禮의 변화와 乾隆의 '盛世」, 『역사문화연구』 제68집, 2018. 이외 다음의 연구 참조. 張雙智, 『清代 朝覲制度研究』, 學苑出版社, 2010; Ning Chia, "The Lifanyuan and the Inner Asian Rituals in the Early Qing(1644-1795)", *Late Imperial China* 14.1, 1993; 蘇紅彥, 「清代 蒙古王公年班制度對蒙古地區的影響」, 『陰山學刊』 第18卷 第6期, 2005; 蘇紅彥, 「試析清代蒙古王公年班的創立與發展」, 『內蒙古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39卷 第2期, 2007; 蘇紅彥, 「清代蒙古王公年班的特點與作用」, 『內蒙古社會科學』 第28卷 第1期, 2007; 張雙智·張羽新, 「論清代前後藏朝覲年班制度」, 『西藏研究』, 2009年 第5期 등.

논구해보고자 한다.

II. 칸들의 선물: 天命年間 만주-몽골의 예물교환

후금이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내몽골 부족들은 만주 정권의 사활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그들은 우호 관계를 맺더라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적대적으로 돌아설 수 있었으므로 후금에게 내몽골은 정치·군사적으로 중요하면서도 다루기 까다로운 상대였다. 당시 만주 정권과 몽골 부족들은 어느 한쪽이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 채 타협과 불화를 반복하는 긴장 상태에 있었다. 누르하치는 정권의 위협 요소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적대적인 몽골 부족들까지 동맹 세력으로 포섭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후금과 내몽골 부족들의 직접적인 왕래가 시작되면서 양자 사이의 예물교환도 빈번해졌다. 내몽골 부족의 유력 귀족 중에서 처음 후금을 방문한 사람은 코르친부의 밍안 타이지였다. 그는 해서여진을 비롯한 9개 부족이 누르하치를 공격한 ‘九部之戰’에 참전했다가 패주한 이후 자신의 딸을 누르하치에게 시집보내 후금과 우호 관계를 맺었다. 天命2년(1617)正月 누르하치는 성 밖 100리까지 나가 밍안 타이지를 맞이하고 매일 잔치를 베풀며 40호의 사람과 40甲, 비단과 布 등 각종 물품을 선사했다. 이때 밍안 타이지는 낙타 10마리, 말 100마리, 소 100마리, 모직 양탄자를 실은 3마리 낙타에 말린 고기를 실은 13兩의 수레, 치즈와 기름을 실은 2兩의 수레를 선물로 가져왔다.⁹⁾

9) 『滿文老檔』(東洋文庫역주본) I 太祖5 天命2年 正月 初8日~11日, 76쪽; 김주원

천명 연간 후금과 매우 복잡하고 불안정한 관계에 있었던 몽골 부족은 내할하 5부였다. 내할하 5부는 다얀 칸의 다섯째 아들 알추 볼로드의 후예들이 거느린 5개의 오tok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섯 오tok 할하’라고도 한다. 다섯 오tok은 자루트, 바린, 옹기라트, 바유티, 우지에트이며 조상은 동일한 近支들이지만 거의 독립적인 부족을 형성하고 있었고 명으로부터 받는 撫賞銀과 호시 무역의 기회로 인해 후금에 대한 태도도 제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내할하 5부 중에서 바유티部는 후금과 비교적 일찍 우호적 교류를 시작하고 인친 관계를 맺었다. 바유티 부족장 다르한 바투루의 아들 엉거더르는 萬曆34년(1606) 12월 내할하 5부 수장들을 대표해 누르하치에게 ‘쿤돌런 한’이라는 칭호를 바쳤다.¹⁰⁾ 그는 천명2년(1617년) 슈르가치의 딸 순다이 공주와 혼인하여 淸 기록에서는 보통 ‘엉거더르 어푸(efu, 額駙)’라고 지칭된다. 엉거더르와 망골다이, 상가르자이 형제를 비롯한 바유티부의 귀족들은 후금에 망명해 누르하치로부터 인공과 가축, 장원, 각종 예물을 받았으며 별도의 旗를 형성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¹¹⁾

누르하치는 천명6년(1621) 5월 14일 엉거더르 어푸의 동생 몽고 타이지가 망명했을 때 八旗의 공동 창고에서 너구리 가죽과 여우가죽으로 만

외 역주, 『만문노당』(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태조1, 127-128쪽.

10) 『滿洲實錄』(臺灣華文書局發行, 1964)卷3, 123-124쪽;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만주실록역주회, 『만주실록역주』(소명출판, 2014), 137-138쪽.

11) 누르하치는 후금에 내속한 바유티부와 우루트부 수장들의 속민에 대한 권리를 인정했으나 흥타이지는 독립된 기로 편성되었던 바유티와 우루트부를 폐지해 수장들은 종실 버릴러를 휘하로 종속시키고 속민은 우너거와 오본도이가 이끄는 만주팔기 좌·우 양의 소속 游牧蒙古兵으로 편입시켰다. 바유티부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楠木賢道, 『淸初對モンゴル政策史の研究』, 汲古書院, 2009, 31-69쪽; 達力扎布, 「淸初內扎薩克旗的建立問題」, 『歷史研究』, 1998年 第1期; 이선애, 「淸初期外藩(tulergi golo) 형성과정과 理藩院」,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4, 30-34쪽.

든 皮端罩(dahū),¹²⁾ 貂皮로 테두른 가죽옷(jibca)·수달피·灰鼠皮(ulhu)로 테두른 가죽옷, 남녀가 입을 蟒緞으로 만든 의복과 망단·비단, 금과 은, 모청포·취람포, 조각한 안장과 굴레, 石魚가죽으로 만든 안장, 조각으로 장식된 화살통, 궁시를 쏘는 화살통, 그림이 그려진 꺾과 장룡, 그릇·접시 등 각종 물품을 주었다.

바유트부와 달리 옹기라트부의 자이사이 타이지는 누르하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 천명4년 7월 후금이 철령을 점령한 다음 날 밤 자이사이는 자루트부의 타이지들과 함께 철령성을 습격했지만 실패했다. 이때 자이사이를 비롯한 내할하의 타이지들이 후금의 포로가 되었는데 후금은 내할하 5부의 맹세를 받아낸 후 이들을 석방했다. 석방된 자이사이는 천명6년 8월 3일에 자신을 대신할 인질로 아들 둘과 딸 한 명, 그리고 말 2천 마리, 소 3천 마리, 양 5천 마리 총 1만 마리의 생축을 후금에 보냈다.¹³⁾ 누르하치는 말과 양을 8명의 버일러들에게 분배했고 都堂과 總兵官에게도 양을 주었다. 남은 소는 도당·총병관 이하, 千總 이상에게 직위를 고려해 포상해주었다.¹⁴⁾

천명6년 8월 15일 누르하치는 자이사이에게 검은 초피(sahalca seke)로 테 두르고 안감을 모두 貂皮로 짠 가죽옷, 초피 방한모, 스라소니 피단조, (견으로) 꿰맨 신발, 무늬를 새긴 요대, 조각한 화살통에 활과 화살 일체, 정교하게 조각한 안장과 굴레를 채운 말 1마리, 미늘 갑옷·투구와 갑옷 소매 1襲, 일반 갑옷 100벌을 선물로 보냈다.¹⁵⁾ 누르하치가 자이사이

12) 털가죽 외투. 청대 귀족과 滿漢 관원의 禮服으로 쓰인 털가죽 외투. kurume(쿠리메)보다 길고 가죽 털을 겹면으로 내었으며, 朝服(doroi etuku)에 맞추어 입었음. 재료로 黑狐·紫貂·靑狐·貂皮·猓獠猴·紅豹皮·黃狐皮를 사용했음. 이훈, 『만한사전』, 172쪽.

13) 『滿文老檔』(東洋文庫) I 太祖25, 天命6年 8月 初3日, 365쪽; 김주원 외 역주, 『만문노당』 태조1, 605-606쪽.

14) 『滿文老檔』(東洋文庫) I 太祖25 天命6年 8月 20日, 370쪽; 김주원 외 역주, 『만문노당』 태조1, 616-617쪽.

에게 준 예물은 최고급 모피인 검은 초피 등으로 만든 가죽옷과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軍裝類로 당시 후금이 유력 몽골 수장에게 선사한 물품들은 대체로 이와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이 외에 蟒緞·閃緞·彭緞 등 견직물과 모청포 등도 몽골 부족장에게 증여된 대표적인 물품이다.

천명7년(1622) 3월 29일 누르하치는 내할하와 차하르에서 망명한 귀족들이 각기 한 구사를 이루고 만주 버일러들과 사돈을 맺으며 친교를 맺을 것을 당부한 뒤 4월 초하루 차하르·할하 몽골 귀족들과 만주 종실의 혼인을 직접 주재했다. 그리고 4월 초2일 차하르 귀족들에 대한 대규모 하사가 진행되었다.¹⁶⁾ 타이지들에게 각기 금 5량·은 200량·蟒緞 4필·깃 부채(debsiku) 1개·비단 10필·모청포 200필·짚 초피 가죽옷 1벌씩·검은 초피 피단조 1벌씩·스라소니 피단조 1벌·명나라(nikan) 너구리 피단조 1벌씩을 지급하고 그 아래 2등급, 3등급으로 차등을 두어 물품을 하사했다.

이때 차하르 귀족들에게 지급한 상이 총 금 87량·은 3,400량, 큰 망단 62필·작은 망단 25필 총 망단 87필, 명주비단(cuse)·紡絲비단(fangse)·彭緞(pengduwan)·綾緞(lingse) 네 종류의 비단 178필, 모청포·취람포 총 3,100필, 흑초피로 테를 두르고 안감을 초피로 꿰맨 가죽옷 9벌·흑초피 피단조 9벌·스라소니 피단조 9벌·망단으로 겹을 대고 초피로 테를 두른 가죽옷 10벌·표범 피단조 10벌·여우 피단조 6벌·너구리 피단조 19벌·여진(jušen) 초피로 테를 두른 흥배 놓은 비단으로 겹을 댄 가죽옷 6벌, 한 구사에 각각 회서피 가죽옷 3벌씩, 살쟁이 가죽옷 4벌씩 모두 회서피 가죽옷 24벌, 살쟁이 가죽옷 32벌로, 가죽옷은 총 81벌, 피단조는 총 53벌이었다.

누르하치가 몽골 부족 수장들에게 선물한 물품은 주로 모피와 모청포,

15) 『滿文老檔』(東洋文庫) I 太祖25 天命6年 8月 17日, 370쪽; 김주원 외 역주, 『만문노당』 태조1, 615-616쪽.

16) 『滿文老檔』(東洋文庫) II 太祖40 天命7年 4月 初2日, 591-593쪽; 김주원 외 역주, 『만문노당』 태조1, 980-983쪽.

망단 등 각종 견직물, 의복, 금과 은 등이었다. 몽골 여성들에게는 모피와 각종 비단, 布 외에 捏摺女朝掛(oljin)¹⁷⁾·捏摺女朝衣(teleri)¹⁸⁾ 등 여성용 朝服, 목걸이와 귀걸이 같은 장신구를 선물했다. 모피는 후금에서 어느 정도 생산·조달할 수 있는 물품이지만 견직물은 그동안 여진이 對明 조공과 馬市 무역, 약탈을 통해 얻은 귀한 물품이었다. 내몽골 부족들과의 관계가 전략적으로 중요했으므로 후금으로서는 그들을 달래기 위한 물질적 수단이 절실했다. 그러나 명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사치품은 물론 생필품조차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 터에 몽골 왕공들에게 선물할 대량의 예물용 물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다.

천명3년(1618) 후금이 요동 지역을 습격해 마을의 양식을 모두 취하고 한인들을 잡아가지 5월 22일 광녕성에서 사람을 파견해 포로 속환을 요구했는데 누르하치는 이를 거부하며 은과 금, 비단, 망단을 더 주어야 화친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천명4년(1619) 개원성을 공격해 “재물과 가축, 금은, 비단, 망단, 모침포 온갖 물건을 모두 만족스럽게 얻고” 이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각 旗를 수색해 은닉한 노획물을 찾아내고 상벌을 분명하게 하는 모습이 기록에 남아있다.¹⁹⁾ 이것으로 보아 비단류의 물품은 명과의 교역 관계가 단절된 이후 거의 약탈에 의존해 조달한 것을 알 수 있다.

누르하치는 점령한 요동 지역의 한인을 활용해 閃緞과 蟒緞 등 비단과 金絲와 종이 등을 제작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A] 같은 날(천명8년 正月), 바유티국의 망굴다이, 바이갈, 키청구, 우바시, 박 타이지에게 한 말. “…… 지금이라도 너희 (內)할하 버일러들이 다시 의논

17) 소매가 없고 천에 주름이 잡힌 긴 저고리 형태의 여성용 조복.

18) 소매가 길고 천에 주름이 잡힌 긴 저고리 형태의 여성용 조복.

19) 『滿文老檔』(東洋文庫)I 太祖10 天命4年 6月, 154쪽; 김주원 외 역주, 『만문노당』 태조1, 250쪽.

하여 나와 맹세한 옛 합의대로 니칸(明)을 토벌하겠다고 한다면 나는 크게 노여워하는 것을 멈추겠다. 우리가 여전히 잘 지냈으면 한다. 나와 함께 원래 맹세한 합의를 바꾸지 않았다면 나와 함께 閃緞, 蟒緞, 비단을 짜는 니칸(漢人)을 얻었을 것이다. 하늘에 죄를 짓고 몸을 팔아 손을 내밀어 니칸의 재화를 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몸을 파는 것이다. 하늘이 모를 것이라고, 재앙이 미치지 않으리라 생각지 말라. 나와 함께 비단을 짤 니칸을 얻었다면 우리 주인이 원하는 물건을 지시하여 만들게 하며 영원히 살았을 것이다. 또 너희가 곡식을 사는 것은 니칸의 법으로 하라고 말했었다. 지금 양 1마리에 모청포 2필로 하겠다. 사라 가려고 한다면 여기에 먼저 사람을 보내라.”²⁰⁾

[B] (천명8년 2월) 11일에 망단, 비단, 흥배를 짠다고 73명이 나가서 짠 망단·비단·흥배를 한이 보고 “짜지 못하는 곳에서 망단·비단·흥배를 짜면 보배인 것이다”라고 가상히 여겨 말하고, “妻가 없는 자에게 치와 노예, 입고 먹을 것을 모두 주고 차역과 군역 등에 관여시키지 않고 가까이서 무양하겠다. 1년간 망단·비단을 얼마나 짜는가? 많이 짜면 많이 상 내릴 것이고 적게 짜면 적게 상 내릴 것이다. 일해서 얻은 것을 보아 상 내릴 것이다. 각종 공과에 관여시키지 않고 군사로 세우지 않겠다. 또 金絲(sese)와 유향을 만드는 자가 있으면 나와라. 그자도 보배이다. 망단·비단을 짜는 일등인 자의 등급으로 삼겠다. 지금 망단·비단을 짜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각종 공과를 면해주겠다.”(라고 했다)²¹⁾

[C] (천명8년 3월) 25일, 都堂이 말하길 “G’ao giya jung 등을 망단·비단을 짜고 금사를 만든다고 하여 등용해 아내와 노비, 옷과 음식을 모두 주었다.

20) 『滿文老檔』(東洋文庫)II 太祖43 天命8年 正月 22日, 632-634쪽; 김주원 외 역주, 『만문노당』 태조2, 24-25쪽.

21) 『滿文老檔』(東洋文庫)II 太祖45 天命8年 2月 11日, 655-656쪽; 김주원 외 역주, 『만문노당』 태조2, 60쪽.

또 밥을 갈아 곡식을 주고 뿔감을 주라고 하여 1등인 사람에게 남자 5명씩, 2등에게는 남자 4명씩, 3등에게는 남자 3명씩을 餘丁으로 주었다. 지금 어떤 자이든 망단과 비단을 짜고, 금사를 만들고 종이를 채에 걸러 만들고, 좋고 치밀한 閃緞(alha), 사발과 접시를 만드는 그러한 각종 유용한 자가 있으면 나옴이다. 나오면 시험해 보고 할 수 있음이 사실이면 G'ao giya jung 등과 같이 등용하여 무양할 것이다.”²²⁾

사료 [A]는 누르하치가 내할하 5부에게 지난날 후금과 함께하기로 한 맹세를 잊지 말고 더 이상의 적대행위를 그만둘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누르하치는 후금과 내할하 양국이 합의한 대로 함께 명을 공격해 요동을 점령했다면 섬단과 망단, 비단을 짜는 한인들을 얻어 그들로 하여금 직조하게 하며 잘 살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섬단과 망단, 비단을 언급한 것은 몽골과 만주 모두 비단을 귀히 여겼고 그만큼 수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B]와 [C]는 요동 지역을 점령한 후 요동 한인 중 섬단·망단 등 비단을 직조하고 흉배를 만들 수 있는 장인들의 요역과 군역 면제 특권을 천명하는 내용이다. “짜지 못하는 곳에서 짜면 보배이다”라는 말을 통해 당시 후금 자체적으로 섬단·망단·흉배를 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누르하치가 열망한 섬단과 망단, 비단 그리고 흉배 등은 후금 종실과 군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하사되었고 몽골 세력을 포섭하기 위한 선물로도 사용되었으므로 군사적 평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주 정권에게 절실한 물품들이었다. 천명 연간 예물 관련 기록에는 누르하치가 몽골 수장들에게 예물을 증여하는 내용이 다수 수록되었다. 이는 누르하치가 내몽골

22) 『滿文老檔』(東洋文庫)II 太祖48 天命8年 3月 25日, 705쪽; 김주원 외 역주, 『만문노당』 태조2, 141쪽.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만문사료에는 몽골 왕공들이 보낸 선물도 다수 등장하는데 당시 몽골 부족들은 주로 말과 양, 낙타 등 牲畜, 양고기, 말이나 양의 젖으로 만든 乳酒 혹은 소주, 버터·치즈 같은 유제품을 선물했다. 이에 비해 후금은 유력 몽골 수장들에게는 다양한 견직물과 모청포, 모피, 금·은이나 금·은으로 만든 술잔, 갑옷과 투구, 갑옷 소매, 화살통과 활집과 같은 위신재를 선물했다. 몽골의 사신이 오는 경우 이들이 가져온 말이나 낙타 1마리에 망단 등 비단 1필과 취람포나 모청포 10필을 답례로 주었다.

『만문노당』에는 천명7년(1622) 정월 7일 코르친부 굽부 타이지(Gumbu taiji)가 보내온 예물에 대한 답례가 짝을 이루어 기록되었다. 굽부 타이지가 보내온 좋은 말 1마리에 대해 (銀) 50兩짜리 酒海·공작깃 망단 1필·3량의 금 술잔과 받침을, 또 거세마 1마리와 암말 9마리에 대해 갑옷과 투구 6벌·2쌍의 갑옷 소매·비단 5필·모청포 50필을 주고 아지거 아거에게 보내온 말 1마리에 대해 좋은 비단 1필, 취람포(혹은 三升) 10필을 주었다. 또 조각한 화살통과 활집 1개, 조각한 요대, 腰刀(loho) 1자루를 주었다.

이 기록에서는 몽골 수장이 보낸 좋은 말 1마리에 대한 답례 물품과 거세마 1마리와 암말 9마리에 대한 답례 물품을 구분하고 이 외에 화살통과 활집, 요대·요도와 같은 예물을 더해 주었음을 강조했다. 굽부 타이지가 아지거 아거에게 보낸 말 1마리에 대해서는 좋은 비단 1필과 취람포 10필을 주었는데 이는 옹니우트부 자이사이의 사신 2명이 후금에 왔을 때 낙타 1마리 당 망단 1필과 모청포 10필을 주었다는 기록과 물품의 종류·수량이 일치한다.²³⁾

당시 상호 교환되는 예물에 어느 정도 통상적인 관례는 있지만 몽골

23) 『滿文老檔』(東洋文庫)II 太祖32 天命7月 正月 7日, 476쪽; 김주원 외 역주, 『만문노당』 태조1, 788쪽.

수장에게 물품이 증여되는 방식과 품목·수량 등에 정해진 기준은 아직 없었다. 몽골 귀족들의 정치적 중요도와 등급에 따라 증여된 물품의 종류와 수량, 품질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만주와 몽골이 주고받는 예물과 관련한 예제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몽골 수장들이 후금에 가져온 말·소·낙타·양 등 생축과 술, 유제품들을 누르하치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한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몽골 수장들이 선사한 선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선물 교환은 사회·정치적 관계를 입어내기에 좋은 단서가 된다. 동등한 관계에서 상대방의 선물을 받지 않거나 제대로 답례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서열이 명확한 관계에서는 권력자가 하급자로부터 받은 선물을 되돌려주거나 더 후하게 답례하여 자신의 권위와 덕을 과시하기도 한다. 만주-몽골 간 예물교환의 양상을 보면 누르하치의 지위가 몽골 수장보다 우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누르하치가 몽골 수장들이 보낸 선물을 받지 않고 돌려보낸 일은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선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변명을 하기도 했다.

(천명10년 6월 초6일) 한에게 (오오바의 사신) 당갈라이가 말 1마리, 초피 10장을 가져왔었다. 취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한이 말하길, “받지 않았다고 마음속으로 나쁘게 생각지 말라. 내가 원래 살아온 義는 담화할 때 남의 곡식을 먹지 않고 재화를 취하지 않았었다. 네(오오바를 지칭-필자 주)가 약속에 오지 않았다고 노여워서 받지 않은 것이 아니다. 네가 올 수 없었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형제들에게 죄를 얻었는데 城이 없어 (약속한 장소에) 온 후에 國人과 가족을 데려갈까 해서 오지 않은 것임에 틀림없다. ……”라고 글을 적어 보냈다.²⁴⁾

누르하치는 코르친부 수장 오오바의 사신이 가져온 말과 초피를 받지 않고 돌려보내면서 이와 같은 변명을 덧붙였다. 누르하치가 “네가 약속에 오지 않았다고 노여워서 받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한 말은 천명10년 5월 開原에서 만나기로 한 오오바가 사신만 파견하고 자신은 오지 않은 일에 대한 언급이다.²⁵⁾ 누르하치가 오오바의 선물을 수령하지 않은 것은 분명 이 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누르하치는 코르친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물 거절에 대한 변명을 한 것이다.

후금은 코르친부를 포섭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양국의 관계가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코르친부 계파 사이에 후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고 특히 코르친 우익 수장 오오바는 코르친부 좌·우익을 아우르는 권력자로서 후금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 천명 10년(1625) 8월 차하르가 코르친을 공격할 것이라는 첩보가 입수되기 직전까지 오오바는 누르하치의 연합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당시 양자의 관계에서 누르하치는 결코 우위에 있지 않았다.²⁶⁾

누르하치가 내몽골 수장들에게 많은 선물을 하고 그들이 보낸 선물에 후하게 답례한 것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거나 선전 효과를 노렸기 때문이지 상위 권력자의 은혜를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다. 천명 연간 누르하치는 내몽골 부족들에 대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 채 이들을 동맹으로 끌어들

24) 『滿文老檔』(東洋文庫)Ⅲ 太祖65 天命10年 6月 初6日, 974-975쪽; 김주원 외 역주, 『만문노당』 태조2, 579-581쪽.

25) 『滿文老檔』(東洋文庫)Ⅲ 太祖65 天命10年 5月 24日, 974쪽; 김주원 외 역주, 『만문노당』 태조2, 578쪽. “(천명10년 5월) 24일에 개원에 도착한 날, 이사무·코보이·오오바의 사신 당갈라이가 함께 도착해서 고하길, ‘오오바가 그가 결혼한 아내 때문에 그에게 죄가 씌워질까 하여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고했다. 그 뒤 즉시 돌아갔다.”

26) 후금과 코르친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김성수, 「17世紀初 滿蒙 關係와 內陸 아시아 -만주·호르친·몽골 관계를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제82집, 2013; 이선애, 「滿文史料를 통해 본 後金시기 滿·蒙 關係」, 『明清史研究』 제49집, 2018.

이기 위해 노력했다. 사료에 기록된 몽골 왕공들에 대한 누르하치의 선물과 증여 방식은 이러한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Ⅲ. 天聰 연간 이후 예물교환의 양상

홍타이지가 후금 한으로 등극한 이후 反차하르 동맹이 형성되면서 내몽골 부족과의 역학 구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화북 원정이 마무리되고 차하르부 원정이 막 시작된 천총5년(1631) 경부터 당시 기록에 홍타이지의 권위가 강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료에는 천총5년을 기점으로 몽골 왕공들이 홍타이지에게 신년하례를 올리는 장면이 상세히 묘사되기 시작했다.²⁷⁾ 또 홍타이지가 몽골 왕공들에게 하사한 예물과 함께 몽골 수장들이 홍타이지에게 진헌한 물품 및 진헌품 수령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었다.

천총 연간 만문사료에는 aniya doro 즉 신년 하례를 위해 후금을 방문한 몽골 수장들에게 후금 한이 연회를 베풀고 각종 예물을 하사하는 양상이 이전과 비교해 절차와 격식을 갖춘 모습으로 기록되었다. 또 후금 방문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부락으로 돌아가는 몽골 수장들에게 “가는 예로 준 것(genere doroi buhengge)” 즉 전송 예물이 상세히 기록되었다.

천총 연간 몽골 수장과 홍타이지의 접견 의례에 관한 기록에는 홍타이지가 몽골 수장들이 진헌한 물품을 받지 않고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주는

27) 구범진은 天聰5년(1631) 正月 초하루부터 몽골 왕공들이 신년 하례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로써 신년 축하 행사는 단지 민속 명절이 아니라 만주인 국가 최대의 정치·외교 행사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구범진, 『淸 乾隆 연간 外藩 宴禮의 변화와 乾隆의 '盛世』, 『역사문화연구』 68, 152-153쪽.

행위가 반복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했다. 특히 “하나도 받지 않고 돌려주었다(emu hono gaihakū bederebuhe)”라고 하여 몽골 수장이 선물한 물품을 흥타이지가 전혀 받지 않았음을 강조한 기술도 눈에 띈다.

니콜라 디 코스모도 지적했듯이 흥타이지의 진공 예물 수령 여부가 갖는 의미는 주목할 만하지만 어떤 규칙성이나 기준을 짚어내기는 쉽지 않다.²⁸⁾ 흥타이지는 어떤 경우에는 몽골 귀족이 가져온 예물을 전혀 받지 않고 厚待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체면을 고려해 일부를 받기도 했다. 다만 몽골 귀족에게 賜與한 예물은 인친 관계와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그 규모와 값어치에 큰 차이가 있었다. 몽골 귀족들에게 선물한 물품은 대개 망단과 모청포였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에게는 진귀한 물품이 대규모로 증여되었다.

천총5년(1631) 1월 투시예투 칸(혹은 어푸) 오오바와 준저 거거 부부가 후금을 방문했을 때 흥타이지는 막대한 양의 예물을 하사했다. 정월 25일에 흥타이지와 망굴타이 및 여러 타이지들과 대신들이 書房(bithe i boo)에 모여 살펴보고 예물을 주었고, 26일에는 ‘한의 집(han i boo)’에서 오오바와 준저 거거에게 예물을 지급했다. 그리고 30일에는 ‘보내는 예(fudere dororo)’로 잔치를 베풀고 한(han)이 예물을 하사했다.²⁹⁾

28) Nicola Di Cosmo and Dalizhabu Bao, *Manchu-Mongol Relations on the Eve of The Qing Conquest*, Brill, 2003, pp.173-174.

29) 『滿文老檔』(東洋文庫)Ⅴ(太宗) 太宗34 天聰5年 正月 25日, 正月 26日, 467-469쪽;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 『만문노당역주』(소명출판, 2017) 태종2, 762-769쪽.

30) 만주어로는 solha. 뚜껑이 있는 금속 밥그릇이다.

31) kaikamsi라고 되어 있는 이 물품에 대해 『內閣藏本滿文老檔』 簽註에는 “무슨 말인지 찾을 수 없어 원래대로 베껴썼다”로 했다. 東洋文庫 일역본에서는 『大清全書』의 ‘kaikamari’와 『淸文彙書』의 ‘kaikari’ 항목을 참고하여 kaikamsi를 바닷조개인 ‘거거(碑碑)’로 보았다. 碑碑는 거거과의 바닷조개로, 껍데기는 부채를 펼쳐놓은 모양이고, 겉은 회백색이고 속은 광택 있는 우윳빛이다. 껍데기는 그릇이나 어항으로

〈표 1〉 천충5년 1월 투시예투 칸 오오바와 준저 거거 부부에게 하사한 예물

날짜/ 하사 주체	수령자	물 품
천충5년 正月 25일/ 홍타이지, 망굴타이 등 만주 종실과 대신들	오오바, 준저 거거	蟒緞·倭緞·큰 비단 10필씩, 작은 비단 80필, 모청포 500 필, 붉은 毛氈 10장, 은 100량짜리 盆과 100량짜리 湯罐 ³⁰⁾ 1개씩, 은 60량짜리 술잔과 茶桶 1개씩, 금 술잔 1쌍, 은 술잔 2개, 은병 1개, 銀製 사람 조각이 있는 술잔(menggun i niyalma noho hūntahan) 1개, 옥 술잔 2개, 금 10냥, 진주(nicuhe) 10량, 호랑이·표범 가죽 10장, 해달·수달 가죽 20장, 여러 물건을 담은 가죽 상자·金絲·絲絨이 담긴 가죽 상자 2개씩, 담배 100帖, 茶 100꾸러미, 琥珀 염주 1개·梅檀 염주 1개, 磚磬 ³¹⁾ 염주 1개, 호박으로 장식한 상자 1개, 보통 호박 1개, 산호 1개, 네모난 수정 3개, 둥근 수정 1개, 금 귀이개 1개, 은 세공품 2쌍
	공주 시종들	비단 7필, 모청포 50필
正月 26일/ 한(han)의 집	오오바	倭緞에 貂皮를 꿰매 안을 대고 貂皮로 테를 두른 가죽옷 1벌, 金佛頭를 박은 貂皮 모자 1개, 스라소니 가죽옷 1벌, 표범 가죽옷 1벌, 短衣 1벌, 火金이 상감된 腰帶 1개, 火金이 상감된 화살집에 활과 화살 끼운 것 1개, 신발·양말 1쌍, 조각한 안장 2개, 투구와 갑옷소매·조각한 明甲(겉미늘갑옷) 3벌, 흥배를 꿰맨 갑옷 7벌 이렇게 갑옷이 총 10벌, 금 입힌 잔 1개, 금 입힌 술병 1개, 금 입힌 병 1개, 망단·왜단·큰 비단 15필, 작은 비단 15필 비단 총 30필, 모청포 100필, 茶 50꾸러미, 담배 50帖, 붉은 毛氈 2장, 櫃子 4개
	준저 거거	금꽃과 진주 구름을 박은 捏褶女朝褂·捏褶女朝衣 1쌍, 기운 捏褶女朝褂·捏褶女朝衣 1쌍, 좋은 금으로 만든 구름 문양 장식과 金佛頭와 뒤에 박을 것을 모두 박은 貂皮모자 1개, 검은 貂皮 가죽옷 1벌, 短衣 1벌, 신발 2쌍, 금으로 만든 큰 전대 1개, 東珠와 瑪瑙를 넣은 목걸이 1개, 금 귀걸이 2쌍, 호박을 넣은 靑金石 염주 1개, 진주를 박은 siberhen ³²⁾ 1쌍

쓰이거나, 각종 장식품으로 쓰이며 예로부터 七寶 중의 하나로 졌다. 『만문도당역주』 太宗 2, 763쪽, 각주7 참조.

32) siberhen에 대해 『內閣藏本滿文老檔』 簽註는 “삼가 찾아보니 〈無圈點十二字

날짜/ 하사 주체	수령자	물 품
正月 30일/ 전송하는 예로 한이 준 것	준저 거거	초피로 테 두른 가죽옷 1벌, 께맨 날접여조괘 1벌, 호박을 넣은 산호 염주 1개, 큰 호박 1개, 각종 粧緞, 片金(gilt- asikū), ³³⁾ 조각 조각의 가죽상자 1개, 삼중으로 조각한 안 장을 맨 말 1마리
	오오바	황색 비단으로 테두리를 께맨 가죽옷 1벌, 금 상감된 굴레 와 밀치끈을 채우고 보통 안장을 맨 말 1마리

투시예투 칸 오오바와 준저 거거가 받은 예물은 규모나 가치 면에서 최고의 예수가 담긴 물품들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통해 누르하치 시대에 비해 예물 품목이 더욱 다양하고 화려해졌음을 알 수 있다. 홍타이지가 하사한 물품에는 진주와 東珠·琥珀·산호·瑪瑙·청금석·수정 등 보석과 염주뿐 아니라 담배와 茶가 포함되었다. 담배는 대략 16세기 말에는 일본과 한반도뿐 아니라 만주 지역에도 들어와 17세기 초에는 만주인들의 기호품으로 자리 잡았다.³⁴⁾ 후금과 명의 교역이 중단된 이후 후금이 담배를 조달할 수 있는 창구는 조선이 유일했으므로 홍타이지가 몽골 귀족들에게 하사한 담배는 조선을 통해 입수했을 것이다.³⁵⁾

홍타이지가 코르친 우익 오오바를 견제하기 위해 코르친 좌익 수장들과 적극적으로 통혼한 결과 만주 종실과 코르친 좌익은 ‘一家’를 이루게

頭)와 〈舊清語〉에 모두 siberhen이라는 말이 없다. 〈淸文鑑〉에 siberhen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와 맞지 않는다. 찾을 수 없어서 원래대로 베껴 썼다.”라고 했다. siberhen은 양초의 심지 혹은 손끝으로 비벼서 끈 종이 끈이나 촛불의 심지를 가리킨다. 한어로 염지(捻紙) 혹은 연자(撚子)라고 한다. 이훈, 『만한사전』, 742쪽.

33) 片金은 금실로 꽃무늬를 수놓은 비단이다.

34) 이하 담배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논문 참조. 임경준, 「담배 태우는 만주인들 -청초 만주인의 담배문화와 烟禁令-」, 『淸史研究』 제55집, 2021.

35) 임경준, 「담배 태우는 만주인들」, 89-91쪽.

되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예우도 다른 몽골 부족들에 비해 친밀하고 극진했다. 홍타이지는 코르친 좌익의 콩고르 마파(konggor mafa)가 후금을 방문한 때에도 극진한 예로 맞이했다.³⁶⁾

천총5년 2월 22일 콩고르 타이지가 ‘고두하러 온 예(hengkileme jihe doru)’로 가져온 말 8마리, 낙타 1마리, 초피 털가죽 외투 1벌, 조각한 안장과 굴레를 맨 2마리 말 중에서 안장과 굴레를 채운 말 2마리와 낙타 1마리를 받지 않고 돌려보내고 말 6마리와 초피 털가죽 외투만 취했다. 그리고 콩고르 버일러와 시종 104명에게 양·사슴·평·생선·차와 우유·버터·멧쌀·소금과 뿔감·술 등 후금에서 지내면서 사용할 식량과 뿔감을 지급했다.³⁷⁾

3월 15일 콩고르 마파가 코르친으로 돌아갈 때 전송하는 예로 준 물품은 오오바와 준저 거거에게 준 예물에 비하면 약소하지만 정교하게 장식된 안장, 갑옷과 투구, 화살통 등의 위신재와 금·은이 들어간 각종 용기, 검은 초피와 망단·왜단으로 만든 의복, 비단과 직물 그리고 독수리 깃과 같은 가치가 높고 상징성 있는 물품을 선사함으로써 콩고르 마파에 대한 예우를 표했다.³⁸⁾ 또 홍타이지는 오오바와 콩고르에게 자신이 입던 가죽 옷을 선사했는데 이는 인척으로서의 친밀감과 한의 은혜를 돋보이게 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³⁹⁾

36) 콩고르는 밍안, 망구스 타이지의 형제로 그의 딸이 만력43(1615)년 누르하치와 혼인했으므로 코르친 좌익의 원로 수장이자 누르하치의 장인으로서 만주 종실들에게 ‘마파(mafa, 할아버지)’라는 존칭으로 불렸다.

37) 『滿文老檔』(東洋文庫)V(太宗2) 太宗天聰35 天聰5年 2月 19日, 20日, 22日, 24日, 477-479쪽; 『만문노당역주』 태종2, 778-781쪽.

38) 『滿文老檔』(東洋文庫)V(太宗2) 太宗天聰36 天聰5年 3月 15日, 485쪽; 『만문노당역주』 태종2, 790-791쪽.

39) 『滿文老檔』(東洋文庫)V(太宗2) 太宗天聰34 天聰5年 正月 初1日, 461쪽(『만문노당역주』 태종2, 752쪽); 太宗天聰35 天聰5年 3月 初5日, 481쪽(『만문노당역주』 태종2, 784쪽).

홍타이지가 오오바 부부와 콩고르가 진헌한 물품 중 일부를 돌려보낸 사실도 주목된다. 천총5년 정월 초2일 투시예투 한 오오바와 준저 거거가 잔치하는 禮(sarilaha dorо)로 홍타이지와 大버일러 다이산, 망굴타이에게 예물을 바쳤는데 홍타이지에게는 안장을 맨 말 1마리·맨등말 1마리·초피로 테 두른 가죽옷 1벌을 바쳤다. 홍타이지는 안장을 맨 말은 받고 말 1마리와 가죽옷을 돌려보냈다. 또 ‘한(han)의 집에서 준 것’을 나열한 뒤 오오바와 준저 거거가 후금에 가져온 가죽 중 절반은 돌려보내고 홍타이지는 말 7마리·가죽옷 1벌·겨울모자 1개·초피 털가죽 외투 1벌을 취하고, 두 명의 푸진은 양 50마리씩, 소 5마리씩, 초피로 만든 조악한(ehe) 털가죽 외투 1벌씩 받았다고 기록했다.

기록에는 홍타이지가 하사한 막대한 양의 고급 물품을 일일이 열거한 후 오오바 부부가 바친 가죽이나 물품은 대부분 돌려보내고 극히 일부만 취한 것이 강조되었다. 그나마 홍타이지의 푸진들이 취한 것은 ‘조악한’ 털가죽 외투였다. 또 콩고르 타이지가 고두하러 온 예로 바친 물품 중 말 6마리와 초피 털가죽 외투만 수령했다고 명시하는 등 천총 연간부터 후금 한과 몽골 귀족들 사이에 오간 예물 관련 기록에는 ‘한이 받지 않고 돌려보낸’ 물품이 자세히 기록되었다.

만주 정권과 코르친 부족의 혼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암바 마마(amba mama, 大妃)와 아지거 마마(ajige mama, 次妃)이다.⁴⁰⁾ ‘암바 마마’는 코르친 좌익 수장 망구스의 아내이자 홍타이지의 中宮 푸진 孝端 文皇后의 모친이다. 암바 마마의 며느리 아지거 마마는 망구스의 아들 자이상의 아내이며 莊妃(훗날 효장문태후)의 모친이다. 따라서 암바 마마와 아지거 마마는 홍타이지의 장모들이 된다. 암바 마마와 아지거 마마는 만

40) 만주어로 마마(mama)는 ‘할머니, 조모’를 뜻한다. 『清實錄』은 암바 마마와 아지거 마마를 각각 大妃와 次妃로 칭했다. 홍타이지는 후에 암바 마마를 福妃(자사크 부얀투 카툰), 아지거 마마를 賢妃(자사크 빙투 카툰)로 봉했다.

주 종실과 적극적으로 통혼을 추진했으며 아지거 마마의 아들인 옥산, 차간, 소놈, 만주시리와 그들의 자손들도 만주 종실과 매우 밀접한 인친 관계를 맺었다.⁴¹⁾

천총3년(1629) 윤4월 19일 암바 마마와 아지거 마마가 처음으로 후금을 방문했을 때 홍타이지는 다이산·망굴타이·아민 등 버일러들과 비빈을 이끌고 나가 예를 다해 접견했다.⁴²⁾ 『淸太宗實錄』에 의하면 암바 마마는 담비가죽옷·담비가죽 외투·金佛頂을 단 담비 모자·금 가죽띠·손수건과 주머니·朝衣·신발·金佛頂을 단 여름 모자를 홍타이지에게 바치고 朝衣·금불정을 단 여름 모자·낙타·말·소·양 등의 물품을 두 명의 푸진에게 바쳤다.⁴³⁾ 그리고 세 大버일러에게 각각 말 2마리·소 5마리·양 20마리씩, 다른 버일러들에게 말 1마리씩을 선물했다. 홍타이지는 암바 마마가 바친 것들을 나누어 다시 세 명의 大버일러와 공주들에게 낙타 1마리씩 하사했다. 5월 6일 암바 마마가 귀국할 때 홍타이지는 가죽과 비단·의복·금과 진주·안장을 갖춘 말·활과 화살·갑옷과 투구·그릇과 여러 물품들을 매우 후하게 하사했다.⁴⁴⁾

이후 암바 마마와 아지거 마마, 옥산 타이지 등과 홍타이지는 자주 사신을 파견해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사신을 통해 전달된 물품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 암바 마마 일족은 말과 양, 초피 외에 송골매, 철갑상어(ajin nimaha, 鯨魚)를 보내기도 했고 홍타이지는 답례로 초피 모자와 의복, 비단과 모청포, 담배·살담배 등을 보냈다.

41) 이선애, 「청 초기 外藩(tulergi golo) 형성과정과 理藩院」, 42쪽; 杜家驥, 『清代滿蒙聯姻關係』, 人民出版社, 2003, 4-13쪽; 楠木賢道, 『清初對モンゴル政策史の研究』, 93-100쪽.

42) 『淸太宗實錄』卷5 天聰3年 閏四月 甲戌日.

43) 여기에서 두 명의 푸진은 암바 마마의 딸 저저 즉 효단문황후와 아지거 마마의 딸 봄보고르 즉 莊妃일 것으로 추정된다.

44) 『淸太宗實錄』卷5 天聰3年 5月 庚寅日.

천총7년(1633) 4월 28일 암바 마마와 아지거 마마, 옥산, 만주시리 어푸와 그의 아내 거거(요토의 장녀)가 후금을 방문했을 때 흥타이지는 여러 버일러들을 이끌고 ‘장모에 대한 예’로 접견했다.⁴⁵⁾ 또 옥산과 만주시리 등이 한에게 고두할 때에도 ‘친척의 예’로 서로 행례하며 만나는 등 사료에서는 만주 종실이 암바 마마 일족과 매우 친밀한 一家임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때 암바 마마의 딸과 어르커 추후르 버일러 도도의 혼인이 성사되었고 암바 마마의 아들 키타트와 흥타이지의 딸 다저(Daje) 공주의 혼인도 결정되었다.⁴⁶⁾

암바 마마 일가가 후금에 도착한 4월 28일부터 6월 초2일 귀국할 때까지 계속해서 연회와 예물교환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모두 열거하기는 어렵다. 예물의 수량과 품목이 특기할 만한 사례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천총7년 4월 28일 “만나러 온 예로 가져온 가축(acanjihā dorō i gajihā ulga)”

증여자	수령자	바친 예물	수령한 예물
	흥타이지	조각한 안장과 굴레를 맨 말 2필, 맨등의 좋은 말 6필, 낙타 10마리, 맨등말 89필, 소 95마리, 양 1천마리, 초피로 테 두른 가죽옷에 초피로 안감을 맨 가죽옷 1벌, 초피 피단조 1벌, 국화정을 박은 방한모 1개, 조각한 은 요대 1개, 꽃모양 있는 비단 신발 1쌍, 푸른 망단 조의 1벌, 초피 100장	조각한 안장과 굴레를 맨 말 1필, 맨등말 4필 수령. 나머지 말·낙타·소·양은 모두 돌려줌. 가죽옷, 피단조, 초피, 비단, 요대 등은 모두 수령.
암바 마마	암바 푸진	倭緞 날접여조괘, 날접여조의 1습	수령

45) 『內國史院檔 天聰七年』天聰7年 4月 28日, 40쪽.

46) 『內國史院檔 天聰七年』(東洋文庫, 2003), 天聰7年 5月 初6日, 49-51쪽; 『清太宗實錄』卷14 天聰7年 5月 丁酉日.

증여자	수령자	바친 예물	수령한 예물
	아지거 푸진	蟒緞 날접여조의, 粧緞 날접여 조괘 1습	수령
아지거 마마	홍타이지	조각한 안장과 굴레를 맨 말 2필, 맨등말 3필, 낙타 6마리, 방목한 맨등말 80필, 소 90마리, 양 1천마리, 초피로 테 두른 가죽옷에 초피로 안감을 댄 가죽옷 1벌, 초피 피단조 1벌, 모자솔을 달은 옥초 여름모자 1개, 비단 요대에 손수건과 주머니를 매단 것, 꽃무늬 신발 1쌍	조각한 안장과 굴레를 맨 말 1필, 맨등말 4필 수령. 나머지 말·낙타·소·양은 모두 돌려줌.
	암바 푸진	장단 날접여조의, 망단 날접여 조괘 1습	수령
	아지거 푸진	망단 날접 여조의, 장단 날접여 조괘 1습	수령
	新(ice) 푸진 ⁴⁷⁾	龍緞(undurakū) 날접여조의, 망단 날접여조괘 1습	수령
육산 낙추	홍타이지	조각한 안장과 굴레를 맨 말 1필, 맨등말 4필, 낙타 10마리, 방목한 맨등말 90필, 소 90마리, 양 1천마리, 망단 조의 1벌, 초피로 테 두른 가죽옷 1벌, 초피 피단조 1벌	조각한 안장과 굴레를 맨 말 1필, 맨등말 2필 수령. 나머지 말·낙타·소·양은 모두 돌려줌. 가죽옷, 피단조, 초피, 비단, 요대 등은 모두 수령.

47) 자루트부의 타이지가 암바 마마 일행과 함께 예물을 진헌한 것을 감안하면 '새로운 푸진'은 천총6년에 홍타이지의 東宮 푸진이 된 자루트부 다이칭 버일러 서번의 딸로 추정된다. 서번의 딸은 홍타이지와 혼인한 지 3년만에 이혼하고 여허의 마지막 수장 긴타이시의 손자인 난추(nancu, 南楚)에게 改嫁했다. 杜家驥, 『清朝滿蒙聯姻研究』, 116쪽 참조. 코르친부 아지거 마마의 딸이자 莊妃 봄보고르의 언니인 하이란주(훗날 關雎宮 宸妃)도 '새로운 푸진'일 수 있지만 그녀는 천총8년에 홍타이지와 혼인했으므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증여자	수량자	바친 예물	수령한 예물
	新푸진	비단 날접여조의, 망단 날접여조 괘 1습	수령
만주시리 어푸	홍타이지	조각한 안장과 굴레를 맨 말 1 필, 맨등말 4필, 낙타 5마리, 초 피로 테 두른 가죽옷 1벌, 초피 피단조 1벌	조각한 안장과 굴레를 맨 말 1필, 맨등말 4필 수령. 나머지 말과 낙타는 돌려줌. 가죽옷, 피단조 수령.
	암바 푸진	초피 50장	수령
	아지거 푸진	초피 50장	수령
	新푸진	초피 50장	수령
초이르자이 타이지	홍타이지	말 2필, 낙타 6마리, 방목한 맨 등말 88필, 소 90마리, 양 1천 마리, 망단 무선견조의 1벌, 초 피 피단조 1벌	말 2필
키타트	홍타이지	망단 무선견조의 1벌	수령
자루트부 지르갈랑 타이즈	홍타이지	말 6필, 낙타 3마리	말 2필

기록에 따르면 홍타이지는 말 22마리 외에 나머지 말·소·양·낙타는 모두 돌려주고 가죽옷과 피단조, 날접여조괘, 날접여조의, 각종 비단과 초피, 신발, 요대, 방한모 등은 모두 취했다. 가죽은 일부만 받고 비단과 초피, 朝衣, 요대 등 고가의 사치품은 수령하는 경향은 누르하치 시대에 이어 천총 연간에도 이어진다. 이러한 물품 대부분은 궁정의 사치품으로 소비되기보다 하사품으로 재분배되었거나 교역 물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천총 연간 후금에 귀부한 내몽골 부족들과 한인 장수들이 증가했으므로 후금 조정은 이들과 만주 종실 및 대신들에게 價賜할 물품을 지속적으로 입수해야 했다.

4월 29일 암바 마마 일족에게 소규모 예물이 하사되었고 5월 초9일에

는 아지거 마마가 흥타이지와 푸진들을 초대해 주연을 베풀고 ‘주연의 예 (sarin i doru)’로 초피로 테 두른 가죽옷과 피단조, 초피 100장과 검은여우 가죽 4장, 호박 염주, 금·은 용기 등과 맨등말 187마리를 바쳤다. 흥타이지는 이번에도 초피와 검은여우 가죽은 모두 수령했으며 안장을 맨 말 1필과 맨등말 4필을 취하고 나머지는 돌려주었다.

5월 26일에는 조선이 보내온 예물을 암바 마마 일행에게 구경시키고 일부를 나누어주었다.

(5월 26일) 그날 한, 암바 버일러, 버일러들이 대전에 나와 조선 국왕 이충이 보내온 예물의 재화를 붉은 탁자 위에 연이어서 모양을 내고 아문 앞에 나란히 놓고, 보내러 온 兵部侍郎(bing bu sylang) 朴簠라는 관원을 한에게 알현시킬 때⁴⁸⁾ 한의 장모 암바 마마와 아지거 마마 두 누님(eyun), 옥산 낙추의 두 아내, 만주시리 어푸의 아내 거거를 …… 國이 보내온 물건을 보라고 아문으로 데려와 한의 옆에 앉히고 보내러 온 관원을 무릎 꿇게 하고 만났다. 만남이 끝난 후, 보내온 재물 중에서 두 마마에게 豹皮 3장씩, 綿紬 25필씩, 모청포 30필씩, 白布 50필씩, 綠斜皮 50필씩, 涼席 3개씩, 大紙 15첩씩, 小紙 30첩씩, 監(nikan hasi) 50묶음, 供品(제물, sori) 3升, 胡珠(hūju)⁴⁹⁾ 3승, usiha faha(?) 3승을 주었다. 암바 마마에게 단도와 folo(?)를 주었다. 옥산 낙추, 만주시리 어푸에게 豹皮 2장, 涼席 2개, 綿紬 15필, 腰刀 1개, 모청포 30장, 白布 50장, 녹사피 50장, 大紙(주었다.) 7첩, 小紙 35첩, nikan hasi 50묶음, 供品 3승, 胡珠 3승, usiha faha 3승을 주었다.⁵⁰⁾

48) 『內國史院檔』 일역본에는 pio lu를 朴祿이라고 표기했지만 당시 출신사로 후금에 간 사람은 병조참판을 지낸 朴簠이므로 수정한다.

49) 중앙아시아산 진주.

50) 『內國史院檔 天聰七年』 天聰7年 5月 26日, 66-67쪽. 밑줄 친 부분은 저본에 塗抹치러 된 것으로 『내국사원당』 역주팀이 順治本 滿文 『太宗實錄』 해당 부분을 참고해 복원한 것이다. 동양문고 역주본은 밑줄 친 부분을 傳寫만 하고 해석하지 않았

홍타이지는 이때 후금에 온 春信使 朴簠를 통해 조선 국왕 인조에게 방물을 수량대로 맞추고 義州에 개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물자 수급을 위해 조선을 압박했다.⁵¹⁾ 천총10년 정월 암바 마마가 후금을 방문한 때에도 홍타이지는 조선의 大緞과 彭緞·紡絲, 조선에서 입수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담배와 살담배 등이 포함된 다량의 예물을 선물했다.⁵²⁾ 또 승덕2년(1637) 조선이 공물로 보낸 수달 가죽과 靑黍皮를 할하의 사신들에게 하사한 기록을 통해서도 조선의 물품이 만주 한-황제를 매개로 몽골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⁵³⁾

명과 互市를 유지한 카라친과 투메드부도 명의 물산이 후금-청으로 흘러 들어가는 중요한 통로였다.

같은 그 날(천총5년 4월 초1일), 카라친의 군지⁵⁴⁾의 아들 다람디가 1필의 倭緞 4疋·황색 비단 1필·남색 비단 1필·낙타 1마리와 말 1마리를, 영커서령 타이지가 琥珀 12개·말 1마리를, 도노이 군지와 서령 타부낭은 푸른 蟒緞 1

지만 본고에서는 해석했다. 또 동양문고 역주본에서 저본의 행간에 가필된 문장과 어휘를 괄호 표시로 나타냈는데 본고에서는 생략했다. 『內國史院檔 天聰七年』 범례 6·7 참조.

51) 『朝鮮王朝實錄』 仁祖11年 6月 丙子(16일).

52) 『滿文老檔』(東洋文庫)VI(太宗3) 太宗崇德1 天聰10年 正月 23日, 901-902쪽; 『만문노당역주』 태종3, 1443-1445쪽.

53) 『清太宗實錄』 卷39 崇德2年 11月 辛未日. “辛未以朝鮮所貢獺皮·靑黍皮 賜喀爾喀部落使臣土謝圖汗下京理諾爾舍進·碩雷下貝袞渾津希喇布·賽音台吉下得進·豆爾格齊台吉下瑣諾木·蘇尼特部落騰機思下哈喇吳巴什·阿巴圖·叟塞濟農下巴綏·阿海台吉下宜爾巴·衛徵貝勒下吳巴什·車臣福金下朱喇威·湯古忒台吉下額爾克·塞冷諾木齊下巴牙思護朗·哈喇戶藍下阿爾哈·騰機特下土古爾·蒿齊忒部落巴琿下塞莫·博洛特下諾木齊等有差”.

54) 朵顏衛 우랑하이(兀良哈) 타부낭에게 시집간 카라친 타이지의 딸을 ‘아바하이’ 혹은 ‘군지’라고 했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도노이 군지’에 대해 우운빌릭(烏云畢力格)은 카라친부 타이지의 딸로 타안 올랑합의 여성 수령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烏云畢力格, 『喀喇沁萬戶研究』, 內蒙古人民出版社, 2005, 79쪽.

필·남색 비단 1필·金佛頭를 박은 1개의 倭緞 모자·낙타 1마리·조각한 안장과 굴레를 걸친 말 1마리·맨등말 1마리를, 소놈 타부낭은 호박 112개·石靑素緞袍 1벌·낙타 1마리·石魚 껍질을 입힌 안장과 굴레를 맨 말 1마리·맨등말 1마리를, 도노이 군지는 帽緞 朝服 1벌·金佛頭가 박힌 倭緞 모자 1개·황색 비단이 누벼진 신발 1벌·낙타 1마리와 말 1마리를, 성걸러 타부낭은 말 1마리, 축투 타부낭은 말 1마리, 반디 타이지 말 1마리, 타라이 밍간의 서령 타이지 말 1마리, 엽슈 타부낭 노새 1마리, 갈투 타부낭은 말 1마리, 아라시 타이지가 말 1마리를 가지고 왔다. 호박·蟒緞·비단·朝衣·두루마기·모자·신발을 취했다. 낙타·말·노새는 취하지 않고 되돌려주었다. 온 禮로 1마리 양을 잡고 1마리 사슴 고기로 잔치했다.⁵⁵⁾

(천총5년 4월)초 2일에, (투메드부) 도르지 타부낭이 6尋의 倭緞 1필·남색 비단 1필·말 1마리, 아지나이가 菩提珠 염주에 호박 記念子(to)⁵⁶⁾ 모두 있는 것·蟒緞 1필·남색 비단 2필·말 1마리를 가지고 왔다. 염주·蟒緞·비단을 취하고 말은 되돌려주었다.⁵⁷⁾

위 사료는 카라친과 투메드 부락의 진공 물품과 관련된 많은 기록 중 하나이다. 천총 연간 카라친과 투메드의 진헌 물품을 살펴보면 말과 낙타도 다수 있지만 다른 몽골 부족들과 다르게 각종 비단과 직물이 주류를 이룬다. 이는 이들이 명과 호시를 통해 후금-청의 對明 교역 창구로 기능한 것과 관련이 있다.⁵⁸⁾

55) 『滿文老檔』(東洋文庫)V(太宗2) 太宗天聰36 天聰5年 4月 1日, 494쪽; 『만문노당역주』 태종2, 803-805쪽.

56) to(記念子)는 염주나 구슬 걸이의 기준이 되는 구슬이다.

57) 『滿文老檔』(東洋文庫)V(太宗2) 太宗天聰36 天聰5年 4月 初2日, 495쪽; 『만문노당역주』 태종2, 805쪽.

58) 烏云畢力格, 『喀喇沁萬戶研究』, 136쪽.

카라친은 명조와 접경하여 원래부터 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카라친과 투메드의 황금씨족과 우랑하이 타부낭은 모두 명조와 무역 관계를 유지했고 명조로부터 撫賞銀을 수령했다. 차하르가 西遷한 이후 카라친과 투메드는 만주 정권과 가까워졌지만 이들과 명조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홍타이지는 카라친·투메드의 對明 무역 관계를 유지시켜 그들을 통해 명의 물자를 들여왔다.⁵⁹⁾

홍타이지가 카라친과 투메드가 진헌한 예물 중 말과 낙타는 돌려보내고 비단과 의복·보석은 수령한 이유는 이러한 물품이 주로 對明 교역을 통해 들여올 수 있는 필요한 물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물품들은 다시 償賜와 무역을 통해 몽골 부족에게 공급되었다. 후금-청은 내몽골 부족이 명과 직접적으로 교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제공할 의무 또한 있었다. 이에 청은 카라친·투메드·오르도스를 통해 들여온 명의 비단과 면포 등을 償賜와 무역의 방식으로 다른 내몽골 부족들에게 제공하고 다시 몽골을 통해 전쟁에 필요한 말과 생축을 얻었다.⁶⁰⁾

승덕 연간 청조는 귀화성투메드가 順義王의 명의로 명과 교역하는 것을 허락했다.⁶¹⁾ 귀화성투메드는 매년 例에 따라 명으로부터 償賜를 받아 그것을 다시 청조에 진공했다. 귀화성투메드는 매년 평균 말 100필, 비단 100필을 진공했으며 청조는 이들이 바친 물품을 모두 수령했다. 入關 후 順治2년(1645) 外藩 조공제도를 조정할 때 귀화성투메드의 貢賦도 다시 조정해 말 163마리를 진공하게 하고 비단 진공은 면제했다.⁶²⁾ 중국을 점령한 후 귀화성투메드를 통해 비단을 들여올 필요성이

59) 烏云畢力格, 『喀喇沁萬戶研究』, 136쪽.

60) 達力扎布, 『明代漠南蒙古歷史研究』, 內蒙古文化出版社, 1998, 333-334쪽.

61) 達力扎布, 「清初外藩蒙古朝貢制度初探」, 『蒙元史暨民族史論集』,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420-422쪽.

사라지게 된 것이다.

IV. 황제의 은혜: 승덕 연간 이후 進貢과 回賜

崇德 원년(1636) 4월 홍타이지의 大清皇帝 즉위식을 위해 외변몽고 수장들이 속속 후금에 도착한 후 예물 진헌과 하사의 의식이 거행되었다. 4월 16일, 18일에 코르친 좌·우익과 아루·나이만·자루트·바린·투메드 등의 몽골 부족들이 말과 낙타, 초피 가죽옷 등을 진헌했는데 홍타이지는 이를 받지 않고 모두 돌려주었다. 그리고 4월 23일 만주 종실과 외변 몽골 수장들을 논공해 책봉하고 등급에 따라 조각한 안장과 굴레, 갑옷과 투구, 금과 은그릇, 閃緞과 망단을 상 내렸다. 이어서 황제가 ‘大位에 앉은 禮(amba soorin de tehe dorо)’로 외변몽고 귀족들에게 막대한 양의 물품을 償賜했다. 이때의 예물도 몽골 부족장들의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었다.

코르친 우익 투시예투 親王 바다리와⁶²⁾ 좌익 조리투 親王 옥산에게 倭緞과 蟒緞 1필씩, 비단 8필, 모청포 30필, 銀으로 된 다리 있는 酒海 1

62) 康熙朝『大清會典』卷144 理藩院 朝貢. “國初定, 歸化城土默特二旗, 每年四季貢馬一百匹, 緞一百匹”; “順治二年題准, 歸化城土默特二旗, 四季貢馬一百六十三匹, 免貢緞匹”. (拉巴平措 主編, 『乾隆朝內府抄本《理藩院則例》』, 中國藏學出版社, 2006, 193쪽). 그러나 順治14년에 매년 石青 2千斤을 공납하도록 했다 (拉巴平措 主編, 『欽定大清會典事例 理藩院』, 中國藏學出版社, 2006, 318쪽).

63) 바다리는 투시예투 칸(혹은 어푸) 오오바의 아들이며 오오바가 천총6년에 사망한 뒤 그의 지위를 계승했다. 바다리는 준저 거저와 혼인하여 ‘어푸’의 지위를 계승했으나 투시예투 칸이 아닌 투시예투 지농으로 불리다가 승덕 원년에 투시예투 친왕의 작위를 받았다.

개, 갑주와 갑옷 소매 1벌, 조각한 안장과 굴레 1개, 수달피와 綠斜皮를 4장씩 지급하고 옹니우트부의 두령 군왕인 순 두령과 나이만의 다르한 군왕 군추스, 코르친 우익 자삭투 군왕 부타치, 좌익 바투루 군왕 만주시리 이 4명에게 친왕들보다 약간 적은 예물을 지급했다.⁶⁴⁾ 그 외 여러 몽골 귀족들에게 차등적으로 예물을 지급했는데 이 기록에는 封號를 받지 못한 인물들도 등장하므로 이를 통해 작위 체계 밖에 있는 내몽골 귀족들의 서열과 지위를 짐작할 수 있다.⁶⁵⁾

같은 23일에 황제는 ‘집 창고의 재화 각종 물품(booi ku i ulin ai ai jaka)’을 몽골 귀족들에게 하사했다.⁶⁶⁾ 이 기록에는 앞서 언급된 인물들이 중복되기도 하고 앞의 償賜에서 제외된 인물들이 포함되기도 했다. 예컨대 코르친 좌익의 아지거 마마와 카라친부 구르스힉의 모친(수부디 타부낭의 아내)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고 조릭투 친왕·바투루 군왕·도로이 자삭투 군왕 등은 또다시 예물을 하사받았다.

물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서 蟒緞·倭緞·龍緞·粧緞, 모청포, 綠斜

64) 승덕 원년 외번몽고 왕공에 대한 책봉에 대해서는 楠木賢道, 『清初對モンゴル政策史の研究』, 174-181쪽; 이선애, 「동맹의 代價에서 충성의 代價로」, 『東洋史學研究』 제156집, 2021 참조.

65) 親王과 郡王 다음으로 옹니우트부 다르한 다이칭, 그 다음으로 자루트의 마니 칭 바투루, 코르친의 바이스갈, 코르친의 몽쿠와 이 3인, 바린의 आयुш·만주시리·四子部的 이르잠, 도르베트의 가르마, 자루트의 네이치·하바가이, 아루의 달라이, 옹니요트의 사양, 우라트의 서령, 하라 체릭의 가르마, 코르친 라마스히·무자이·大상 가르자이·무장 이 14인, 우라트의 투먼·두바, 고를로스의 구무·봄바, 두르베트의 서령·처건 구무, 코르친 콩고르 마파 이 7인, 그리고 카라친부 자사크 두령(구루스힉), 투메드부 우익 자사크 히야 노안(경질)·좌익 자사크 다르한(삼바)이 열거되었다. 카라친과 투메드부 수장들에게는 銀兩이 지급되었다. 『滿文老檔』(東洋文庫) VI(太宗3) 太宗崇德9 崇德 元年 4月 23日, 1016-1017쪽; 『만문노당역주』 태종3, 1621-1624쪽.

66) 『滿文老檔』(東洋文庫) VI(太宗3) 太宗崇德9, 崇德 元年 4月 23日, 1018-1021쪽; 『만문노당역주』 태종3, 1624-1630쪽.

皮·금 도금한 銀 腰帶, 腰刀, 조각한 안장과 화살통, 걸미늘·속미늘 갑옷, 비단 朝衣, 金絲로 동전 모양을 낸 겹옷(袍), 망단 舞扇肩朝衣, 茶, 담배와 살담배, 수달피와 초피, 상아로 만든 탕반관, 솔로이國 小刀⁶⁷⁾, 솔로이國 안장, 剪絨 등이 지급되었다. 앞의 償賜와 다르게 몽골 수장들의 작위 등급과 상관없이 개인에 따라 물품과 물량에 차이가 있는데 지급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승덕 원년 이후 만주의 한과 몽골 수장들 사이에 왕래한 선물은 대청 황제에 대한 몽골 왕공들의 進貢과 몽골 왕공에 대한 황제의 下賜로 변화되었고 이와 관련된 초보적인 규정과 제도가 만들어졌다. 대청황제가 된 흥타이지는 후한 상을 내려 몽골의 마음을 얻고 덕 있는 황제의 면모를 드러내고자 했다.

(승덕 원년 7월) 14일에 성스러운 황제가 學士 히퍼·가린·范文程 등에게 말하길, “코르친 투시예투 어푸의 항가이라고 하는 좋은 말에 우리가 갑옷 10 벌을 주겠다고 했지만 (투시예투 어푸는) 주지 않았었다. 그것을 몽고의 차하르 칸이 가져오라 하여 빼앗아 취하고 1개의 투구만 주었었다. 그 뒤로 코르친 버일러들의 마음이 (차하르 칸에게서) 멀어졌다. 또 (차하르 칸이) 그 1개의 투구를 아루의 지농에게 보내어 1천 필의 말을 가져오라고 하자 아루의 지농이 말하길, ‘1개의 투구가 1천필 말의 가치일 리 있겠는가? 이는 우리에게 괜히 빌미를 잡아 침범하려는 것이다. 주지 않을 수 없다’라며 500필의 말을 (차하르 칸에게) 주었었다. 그 뒤로 아루 諸王의 마음이 멀어졌다. 또 (차하르 칸이) 코르친의 조릭투 친왕에게 날아가는 기러기를 낚아채 잡을 좋은 때를 가져오라고 사신을 파견하자, 조릭투 친왕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투시예투 어푸가 충

67) ‘솔로이國’이 어디를 지칭하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外할하의 솔로이 세첸 칸 부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하여(차하르 칸에게) 주게 했었다. 그 매를 취하고도 전혀 보상을 주지 않고 보낸 자를 만나지도 않았다. 그리하였으니 사람의 마음이 어찌 따르겠는가. 지금 곳곳의 몽고가 올 때마다 크게 상 내려 자애해 주므로 헤어질 마음 없이 연해하며 귀국한다. 그렇게 하여 몽고國이 모두 부유하고 평안하게 산다. 그를 헤아리건대 위력으로 복종시키는 것 보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上策인 것이다.”라고 하자 學士 히퍼 등이 답하길 “德으로 다스리는 것은 화합하고,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무너진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라고 했다.⁶⁸⁾

홍타이지는 차하르부 립단 칸이 내몽골 부족들의 인심을 잃게 된 사정을 자신과 대비시켰다. 몽골 왕공들의 소중한 물품을 강탈하는 차하르 립단 칸과 달리 홍타이지 자신은 몽골 부족들에게 크게 상을 내림으로써 이들을 평화롭고 부유하게 하는 자애롭고 덕을 갖춘 칸-황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몽골 수장들이 바친 예물을 일부만 받거나 모두 돌려주고 이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예물을 하사한 행위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승덕2년(1637) 10월 30일에는 萬壽節과 元旦, 大喜事에 외번몽고가 진헌하는 예물의 액수를 제한했다. 그리고 3년 뒤인 승덕5년(1640) 4월 다시 한번 도로이 安平 버일러 두두를 통해 개정된 조례를 宣示했다.

[a] 奉天承運寬溫仁聖皇帝가 詔를 내려 말하길, 萬壽節과 元旦·大喜事는 예부 아문에서 진헌예물 액수를 제정한다. 외번 諸王·노얀·타이지들이 진헌하는 예물의 액수는 旗마다 萬壽節에 聖上께 말 4마리씩, 황후께 말 2마리씩 進獻한다. 祇應(首思, süsi)은 각기 소 1마리·양 8마리. 大喜事 때 외번 諸王·노얀·타이지들이 聖上께 말 2필, 황후께 각기 말 1필씩 진헌한다. 祇應(首

68) 『滿文老檔』(東洋文庫)VI(太宗3) 太宗崇德21 崇德元年 7月 14日, 1178-1180쪽; 『만문노당역주』 태종3, 1880-1882쪽.

思) 각 소 1마리·양 8마리씩.元旦에는 聖上께 말 4필을 진헌하고 황후께 말 2 필을 진헌한다. 祇應(首思) 각 소 1마리·양 8마리(이다).⁶⁹⁾

[b] 도로이 安平 버일리(두두)가 諭를 받들어 외번 王·자사크·타이지 등에 元日 筵宴 宰牲 數目 條例를 宣示하였다. 「예전에 萬壽節과 元日 때 聖上과 母后에게 진헌하는 예물이 너무 많다고 하여 이미 두 번이나 감소시켰다. 지금 다시 만수절과 원단 때 聖上和 母后에게 진헌하는 예물을 철저히 취소하고 筵宴의 禮를 다시 정한다. 외번몽고 각부의 親王·郡王 및 자사크 노안들·타이지들은 旗마다 新年 宰殺·연회용 牲畜을 聖上께 소 1마리·양 8마리·술 9단지씩 진헌하고 母后께는 소 1마리·양 6마리·술 7단지씩 바친다. 만수절 및 일곱 가지 喜慶之事 때 聖上 및 母后의 筵宴에도 이 관례대로 牲畜을 宰殺한다.」⁷⁰⁾

[a]와 [b] 조례가 반포된 사이인 승덕4년(1639) 春正月 初6일자로 이번 원이 작성한 예물 진헌 목록을 보면 新年 하례로 코르친 우익 투시에투 친왕과 자삭투 군왕, 다른 호쇼치 두르베트부의 서령, 코르친 좌익 조릭투 친왕·동코르, 고를로스部 曇巴·구무, 아오한部 구룬 어푸 반디와 나이만部 다른 군왕, 우라트의 투바·오보겐·박바하이, 자루트部 상가르·너이치·무장, 바린部 만주시리·아유시, 옹니우트部 두령 군왕·다르한 다이칭, 카라친部 자사크 두령 서령, 투메드部 자사크 다른 옴부가 말 6마리, 祇應으로 소 1마리·양 8마리·술 9단지를 바쳤다. 그리고 귀화성 투메드의 장진들이 말 50마리와 비단 58필을 바쳤다.⁷¹⁾

69) 『清內祕書院蒙古文檔案匯編漢譯』 01-02-26 〈崇德帝欽定慶賀萬壽節元旦進獻禮物額數之則例〉, 崇德2年 10月 30日, 28쪽.

70) 『清內祕書院蒙古文檔案匯編漢譯』 01-04-07 〈多羅安平貝勒奉諭宣示外藩諸王扎薩克台吉等元旦筵宴宰牲數目條例〉, 崇德5年 4月 初4日, 39쪽.

승덕4년 정월에 몽골 수장들이 바친 물량은 말 6마리와 祗應 소 1마리·양 8마리·술 9단지로 승덕2년의 규정보다 말의 숫자는 오히려 2마리 증가했고 지응으로 술이 첨가되었다. 따라서 승덕5년 다시 조례를 반포해 황제와 황후에 대한 말 진헌은 아예 철폐하고 연회를 위해 희생되는 소와 양 그리고 술의 수량만 규정한 것이다. 사료 [b]를 참고하면 [a]에 등장하는 祗應 즉 몽골어로 ‘수시(süsi, 首思)’는 몽골 제국 시기에는 역참에서 제공되는 보급물자를 의미했지만 여기에서는 연회를 위해 사용될 가축과 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만수절과 원단 때 황제와 황후에게 진헌하는 물품을 제한했을 뿐 외번몽고가 황제에게 바치는 모든 예물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승덕4년 정월 초6일 이번원이 작성한 예물 진헌 명단을 보면 몽골 부족 왕공들이 일정한 조를 이루어 신년 예물을 진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승덕2년(1637) 11월 청 조정이 외번몽고가 예물을 진헌하기에 편리하도록 여러 개 旗를 묶어 별도로 편성한 단위와 거의 일치한다.

(코르친부) 우익 투시예투 친왕의 254개 오목을 2개 旗로 한다. 좌익 조릭 투 친왕의 193개 오목⁷²⁾을 2旗로 한다. (코르친 좌·우익) 총 447개 오목을 4旗로 하고 戶數는 22,355(22,350). 아오한 26개 오목, 나이만 24개 오목 이 둘

71) 『清內祕書院蒙古文檔案匯編漢譯』〈附錄 中國第一歷史檔案館藏, 李保文整理《十七世紀前半期蒙古文文書檔案(1600~1650)》(1997)一書的譯文: 十七世紀前半期蒙古文文書檔案漢譯〉第二部 清代理藩院衙門檔案記錄 08-02-01 〈科爾沁杜爾伯特等部諸諾顏所進獻禮物〉, 崇德4年 春正月 初6日, 401쪽.

72) 『清內祕書院蒙古文檔案匯編漢譯』에는 163개 오목으로 되어 있지만 『蒙文老檔』을 참고한 達力扎布에 의하면 193개 오목이다. 총수 447개 오목이라는 점에서도 『清內祕書院漢譯』의 163개 오목은 오기로 판단된다. 『清內祕書院蒙古文檔案匯編漢譯』 01-2-29 〈崇德帝爲便于進貢行獵及征戰合編外藩蒙古部分鄂托克爲十三旗之勅諭〉 崇德2年 11月 15日, 29쪽; 達力扎布, 「清初“外藩蒙古十三旗”雜考」, 『明清蒙古史論稿』, 274쪽.

을 합쳐 50개 오목을 1旗로 한다. (바린) 만주시리 17개 오목, 아유시 12개 오목 이 둘을 합쳐 29개 오목을 1旗로 한다. (자루트 우익) 상가르 38개 오목, (자루트 좌익) 니이치의 29개 오목 이 둘을 합쳐 67개 오목을 1旗로 한다. (두르벤 케우케드= 四子部落) 다른 조릭투의 42개 오목을 1旗로 한다. (아루 코르친) 무장의 60개 오목을 1旗로 한다. (웅니우트 우익) 두렁 군왕의 25개 오목, (웅니우트 좌익) 자사크 다른 다이칭의 34개 오목 이 둘을 합쳐 59개 오목을 1旗로 한다. 우라트부 37개 오목을 1旗로 한다. 카라친 60개 오목을 1旗로 한다. 투메드 56개 오목을 1기로 한다. (이렇게) 차하르·할하·아바가·투메드 총 460개 오목 9旗,⁷³⁾ 戶數는 모두 23,000.

투시에투 친왕의 5旗를 2旗로 합편한다. 조릭투 친왕의 5旗를 합편해 2旗로 한다. 아오한·나이만을 합편해 1旗로 한다. 2개 바린부를 1旗로 합편한다. 2개 자루트부를 1旗로 합편한다. 四子部落을 1旗로 한다. (아루 코르친의) 무장을 1旗로 한다. 2개 웅니우트부를 1旗로 한다. 우라트[烏刺特]부를 1旗로 한다. 카라친부를 1旗로 한다. 2개 투메드부를 1旗로 한다. 이렇게 총 13旗는 (1년에 3번) 聖上께 공물을 진헌하기 편하기 위해 합편한 것으로 行獵과 정벌 시에는 원래 旗대로 한다.⁷⁴⁾

* 괄호 안의 표기는 達力扎布的 글을 참조해 필자가 보충

73) 여기에서 차하르는 아오한과 나이만 2부를, 할하는 자루트와 바린 2부, 아바가는 칭기스칸 동생들의 후예들이 통솔한 四子部·아루 코르친·웅니우트·우라트 4부를, 투메드는 東투메드를 가리킨다. 이들은 內자사크 몽고 右翼에 해당한다. 達力扎布, 『清初“外藩蒙古十三旗”雜考』, 『明清蒙古史論考』, 277쪽. 따라서 위 사료의 첫단락은 코르친 좌·우익이 해당되는 內자사크몽고 左翼과 아오한·나이만 등 內자사크 몽고 右翼을 나누어 오목(니루)과 호구의 수를 열거한 것이다.

74) 『清內祕書院蒙古文檔案匯編漢譯』 01-2-29 〈崇德帝爲便于進貢行獵及征戰合編外藩蒙古部分鄂托克爲十三旗之勅諭〉 崇德2年 11月 15日, 29쪽; 達力扎布, 『清初“外藩蒙古十三旗”雜考』, 『明清蒙古史論考』, 273-274쪽 蒙文사료 漢譯 참조.

승덕2년 11월에 진행된 進貢을 위한 旗 편제를 표로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공물 진헌을 위한 13旗 편제

부족명	관할 王公	니루數	崇德 2년 進貢 13旗 편제
나이만	다르한 군왕 旗	24	나이만, 아오한 2旗 50개 니루(오독)를 1旗로 합편
아오한	반디어푸 旗/ 소놈	26	
바린 좌익	만주시리 旗	17	바린 좌·우익 2旗 29개 니루를 1旗로 합편
바린 우익	아유시 旗	12	
자루트 우익	상가르 旗	38	자루트 좌·우익 2旗 67개 니루를 1旗로 합편
자루트 좌익	너지치 旗	29	
四子部	다르한 조릭투 旗	42	42개 니루 1旗
아루 코르친	무장 旗	60	60개 니루 1旗
웅니우트 우익	두령 군왕 旗+하라 체릭	16+9	웅니우트 좌·우익 2旗 59개 니루를 1旗로
웅니우트 좌익	다르한 다이칭 旗	34	
우라트	우라트 3旗	37	37개 니루 1旗
카라친	카라친 1旗	60	60개 니루 1旗
투메드	2旗	56	2旗를 1旗로 합편
코르친 우익	투시예투 친왕 旗	58	투시예투 친왕의 5旗 254개 니루를 2旗로 합편
	자삭투 군왕 旗	41	
	라마스힉 旗	36	
잘라이트	다르한 호쇼치 旗	55	
도르베트	서령 旗	64	
코르친 좌익	조릭투 친왕 旗	39	조릭투 친왕의 5旗 193개 니루를 2旗로 합편
	무자이 旗	12	
	동코르 旗	58	
고를로스	븨바 旗	34	
	구무 旗	41	
총계			13旗

승덕4년 정월 예물 진헌 목록을 승덕2년 11월의 13旗 편제와 비교하면 13旗 중 하나인 四子部가 빠지고 13旗에 들지 않는 귀화성투메드의 장긴들이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단이 일치한다. 또 이 단위는 내몽골 부족이 황제에게 진공할 때뿐만 아니라 황제로부터 예물을 받을 때에도 등장한다.⁷⁵⁾ 따라서 ‘外藩 13旗’는 몽골 부족과 만주 황제가 예물을 주고 받을 때 주로 사용된 단위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단위는 일종의 조공 단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승덕7년(1642)이 되면 27旗로 증가하고 순치 말년에는 자사크旗 단위로 조공하도록 개정되었다.⁷⁶⁾

조공은 전체적으로 보면 외변몽고 부락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물 수량은 점차 감소해 건륭 원년 內자사크기는 매년 양 1마리, 술 1병만 진공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이는 청 중후기에는 외변몽고의 진공이 청조의 입장에서 거의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만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후금-청 초기에는 몽골 부족들이 선사한 예물이 교역이나 재분배를 위한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이른바 3대 명절인 元旦과 萬壽節, 冬至에는 문무백관이 경하를 표하고 ‘번속’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는 의례가 거행되었다. 그중에서도 새해의 시작을 의미하는 元旦이 가장 중요했으며 청조도 예외는 아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르하치 시기에도 신년 하례를 위해 일부 몽골 부족들이 후금을 방문했고 천총 연간에 들어서 의례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해 승덕 연간에 관례화되었다. 그러나 입관 후 순치

75) 『清太宗實錄』 권40, 崇德3年 正月 丁卯日. “元旦을 경하하고자 內六旗의 호쇼이 親王·도로이 郡王·도로이 버일러·구사이 버이서들에게 旗마다 은 900냥씩을 하사하고, 외변 13旗의 왕·버일러·버이서들에게 旗마다 당단(蟒緞) 1필·緞 8필·布 100필·갑옷과 투구 1벌·정교하게 만든 撒袋 1개·조각한 안장 1개씩을 하사했다.”(丁卯, 以慶賀元旦頒賜內六旗和碩親王多羅郡王多羅貝勒固山貝子等 每旗銀九百兩, 外藩十三旗王貝勒貝子等每旗蟒緞一緞八布百甲胄一玲瓏撒袋一雕鞍一).

76) 達力扎布, 『清初外藩蒙古朝貢制度初探』, 『蒙元史暨民族史論集』, 422쪽.

초기까지도 전면적인 제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순치12년(1655) 가다훈(gadahūn)旗 소속 一等히야(hiya, 侍衛/護衛) 알라미(alami)의 상주를 계기로 元의 禮로 경사에 온 외변몽고 왕공들에 대한 償賜 규정이 논의되었다.⁷⁷⁾ 순치제는 언로를 열어 7품관 이상 관원들에게 의견을 상언하도록 했는데 알라미가 제기한 여러 의견 중 마지막이 외변몽고를 “자애로 기쁘게 하고 예로써 정중히 대하여 그들의 눈과 귀를 만족시키고 마음을 단단히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알라미의 상언을 계기로 이번원은 다음과 같이 상주했다.

…… (前略) 臣 저희가 살펴보건대 順治11년(1654) 1월 중에 저희 部院에서 상주하기를 “태종황제 시절 肅德6년(1641) 元의 禮로 온 코르친의 투시예투 친왕·조릭투 친왕·다르한 바투루 군왕 이 세 명에게 비단 9필씩·은잔과 받침 1개씩·豹皮 2장씩·綠斜皮 4장씩·花席 2장씩 총 三九, 바린의 만주시리와 무장, 응니요트의 다르한 다이칭 이 세 명에게 비단 8필씩·은잔과 받침 1개씩·수달피 3장씩·녹사피 2장씩·모청포 4필씩 총 二九, 코르친의 라마스히·등고르·잠발라·서령, 우라트의 우번, 자삭투 군왕의 아들 하이라이, 바린의 서령, 두르베트의 가르마, 카라친의 서령, 투메드의 삼바 다르한 이들에게 비단 2필씩·은잔과 받침 1개씩·수달피 2장씩·모청포 4필씩 총 一九를 상 내렸습니
다. 또 순치3년(1646) 元 禮로 온 왕·버일러·버이서·공들·타이자들에게 상

77) 가다훈(gadahūn, 噶達渾, ?~順治14年(1657))은 滿洲正紅旗人으로 나라氏이다. 바야라 잘란 장긴, 정홍기 몽고 구사 어진·만주 구사 어진, 호부상서를 역임했고 순치10年 3월 명안다리(明安達禮)의 뒤를 이어 兵部尙書를 맡았다(순치10년~14년 재임). 가다훈은 순치9년부터 14년까지 만주 구사 어진을 맡았으므로 理藩院題本の ‘가다훈 구사 소속 一等 히야 알라미(gadahūn gūsai uju jergi hiya alami)’라는 표현은 알라미가 만주정홍기 소속 頭等護衛라는 의미인 듯하다. 청대 친위대를 뜻하는 만주어 hiya를 한자로 옮길 때 황제 직속 上三旗 소속 히야는 ‘侍衛’로 下五旗 소속 히야는 ‘護衛’로 구분했음을 상기해주신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내리기 위해 호부와 만나 머르건 왕에게 고하고 친왕들에게 비단 五九, 군왕들에게 비단 四九, 버일러들에게 비단 三九, 버이서들에게 비단 二九, 公들에게 비단 一九, 타이지들에게 비단 7필씩 상 내리기로 정했었습니다. 이후 元트의 禮로 와서 상 내린 바 없었으므로 이 때문에 칙지를 청하여 삼가 상주합니다”(라고 하자) 칙지로 ‘요 몇 년간 오지 않다가 이제 왔으므로 예전에 정한 것을 참고하지 말고 戶部와 만나 다시 의논하여 상주하라. 나의 은혜를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칙지를 삼가 따라 저희 두 部院이 의논하여 친왕에게 비단 六九·1등급 조각한 안장을 맨 1등급 말 1마리·50량 銀차통 1개·酒海 1개·茶 다섯 광주리, 군왕에게 비단 五九·2등의 조각한 안장을 맨 2등 말 1마리·50량 은차통 1개·차 네 광주리, 버일러에게 비단 四九·3등급의 조각한 안장을 맨 3등 말 1마리·40량 은차통 1개·차 세 광주리, 버이서에게 비단 三九·1등급 옷칠한 안장을 맨 3등 말 1마리·30량 酒海 1개·차 두 광주리, 鎮國公에게 비단 二九·2등급 옷칠한 안장을 맨 3등 말 1마리·30량 銀 酒海 1개·차 두 광주리, 輔國公에게 비단 一九·一五, 3등급 옷칠한 안장을 맨 3등 말 1마리·30량 銀주해 1개·차 두 광주리, 1등·2등 타이지에게 비단 一九·3등 옷칠한 안장을 맨 3등 말 1마리·차 한 광주리, 3·4등 타이지에게 비단 7필·3등 옷칠한 안장을 맨 3등 말 1마리, 차 한 광주리를 상 내리겠습니다. …… (중략) 칙지를 삼가 따라 다른 친왕들보다 (봉록이) 더 많은 투시예투 친왕과 조릭투 친왕에게 1등 갑옷 1벌·비단 8필, 다른 군왕들보다 다르한 바투루 군왕에게 여유 있게 50량의 銀 주해 1개·비단 8필, 자삭투 군왕에게 여유 있게 50량의 은 주해 1개·비단 6필을 더해 상 내리겠다고 의논하고 황상께 상주하고 칙지로 정하여 준행하겠습니다. ……⁷⁸⁾

78) 알라미는 湖北의 반란 세력을 토벌하기 위해 파병한 군사를 감축·교대할 것, 백성을 이주시키고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잠시 중지할 것, 전장에서의 論功을 명확히 할 것 등을 제안했고 마지막으로 외번몽고를 후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두어야 한다고 상언했다. 『清朝前期理藩院滿蒙文題本』 卷1, no.92, 順治12年 10月

이번원은 승덕6년(1641)과 순치3년(1646)의 사례를 들어 원단의 예로 청에 내조한 외번몽고 왕공들에 대한 하사품 규모를 정하고자 했다. 순치 11년(1654)까지 원단의 예로 내조한 외번몽고 왕공에 대한 償賜 규정이 제도화되지 않아 승덕6년과 순치3년의 예를 참조한 것이다. 승덕6년에는 작위 등급이 하사품 지급의 기준이 되지 않았지만 순치3년에는 친왕·군왕·버일러와 버이서·公·타이지의 순으로 지급 기준을 마련했고 순치12년 10월의 논의에서는 친왕·군왕·버일러·버이서·진국공·보국공·頭等과 二等 타이지·三等과 四等 타이지 순으로 하사품의 규모를 정했다.

승덕6년에는 비단·은잔과 잔받침·豹皮와 綠斜皮·花席 그리고 수달 피와 모청포로 하사품이 구성되었는데 순치3년에는 비단만 열거된 것으로 보아 순치 초기 하사품의 종류와 규모가 간소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요 몇 년간 오지 않다가 이제 왔다’는 순치제의 언급을 통해 순치3년부터 순치11년 사이 몇 년간 외번몽고 왕공들의 新年 慶賀 來朝가 중단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청실록』에 의하면 순치6년(1649) 정월에 황제가 避痘를 위해 신년 朝賀를 면한 사실이 있고 순치7년(1650)과 8년(1651)에도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나 조하가 중지되었다. 순치9년(1652)에도 피두를 위해 南苑으로 행차해 朝賀의례가 거행되지 않았다.⁷⁹⁾

알라미는 외번몽고에 대한 대우가 소홀해졌음을 지적했다. 그는 몽골인들이 바깥 지역(tulergi ba)에 거주하여 법도가 너무 엄격하면 분산되고 너무 느슨해도 황제의 명을 따르지 않게 되어 매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태종이 몽골인들을 위력으로 겁먹게 하고 자애로 기쁘게 했

29日, <理藩院尙書沙濟達喇等題遵旨議定償賜年班來京朝覲外藩蒙古王公等員條例本>, 138-143쪽.

79) 『世祖章皇帝實錄』 卷42 順治6年 春正月 庚申朔; 卷47 順治7年 春正月 乙卯朔; 卷52 順治8年 春正月 乙酉朔; 卷62 順治9年 春正月 癸酉朔.

으며 그들을 인척으로 삼아 재화를 아끼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서로 화목하게 되고 법도를 따르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은 외번몽고에 대한 자애와 은혜가 줄어들었으니 황제가 그들을 자애로 기쁘게 하고 예를 다해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알라미 의견의 핵심은 먼 곳에 사는 외번몽고가 때에 맞춰 來朝하면 조정은 후한 償賜를 통해 그들에게 황제의 은혜와 덕을 보이고 그들이 離心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한다는 데 있다.

결국 이번원은 승덕6년과 순치3년보다 많은 예물을 외번몽고 왕공들에게 하사하고 코르친 좌우익 친왕들과 다른 바투루 군왕 만주시리, 자삭투 군왕에게는 특별히 더 많은 상을 내리도록 정했다. 이는 승덕6년에 투시예투 친왕, 조릭투 친왕, 다른 바투루 군왕 이 세 명에게 가장 많은 상을 내린 것과 같은 맥락이다. 만주 황실의 가까운 인친이자 혁혁한 군공을 세운 가장 믿음직하고 충순한 외번에게 황제의 파격적 은혜를 보인 것이다. 다만 같은 급의 다른 왕공보다 예물을 더해 받는 사람들을 열거한 명단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이전에는 빠져있던 코르친 우익 자삭투 군왕 바이스갈이 포함되어 같은 군왕급인 만주시리와 함께 열거되었고 이들은 투시예투 친왕과 조릭투 친왕보다 약간 적은 예물을 더해 받는 것으로 조정되었다.⁸⁰⁾ 그러나 만주시리는 순치16년(1659)에 친왕으로 승격되어 다시 투시예투, 조릭투 친왕과 같은 반열에 올랐다.⁸¹⁾

80) 바이스갈은 코르친 우익 자삭투 군왕 부타치의 長子이다. 부타치는 투시예투 칸 오오바의 동생이므로 바이스갈은 오오바의 조카가 된다. 바이스갈은 부친 부타치가 사망한 후 자삭투 군왕의 작위를 계승했다.『欽定外藩蒙古回部王公表傳』卷1 表第一 〈科爾沁部〉(包文漢, 奇·朝克圖 整理, 『蒙古回部王公表傳』第1輯, 內蒙古大學出版社, 1998, 6쪽).

81) 『欽定外藩蒙古回部王公表傳』卷19 傳第二 〈扎薩克和碩達爾漢巴圖魯親王滿珠習禮列傳〉(包文漢, 奇·朝克圖 整理, 『蒙古回部王公表傳』第1輯, 內蒙古大學出版社, 1998, 149쪽).

청대 외변몽고는 元旦이 되면 황제를 알현하는 朝覲의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청조는 이들을 班으로 편성해 돌아가며 경사에 방문하도록 했는데 이를 ‘年班’이라고 했다. 외변몽고의 朝覲·年班은 納貢과 宴賚를 수반했는데 宴賚는 경사에 온 몽골 왕공과 사신, 수행원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하사하는 의례이다. 이러한 의례는 입관 전 만주 한과 몽골 왕공들의 왕래에서 행해진 의례가 관례가 되었고 순치 연간에 定制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또 순치 연간에 정해진 규정들은 강희와 옹정 시기에 개정·조정되고 건륭 연간에 이르러 완비된 제도로 정착되었다.

청대 朝覲年班制度는 외변몽고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도 內자사크(내몽골)에서 外자사크(외할하 혹은 외몽골), 청해, 티베트, 오이라트로 확대되었다. 조근과 수반된 여러 사안들 즉 진헌과 연회, 償賜, 그리고 외변몽고가 황제를 만나러 오는 길에 필요한 음식과 말에게 먹일 사료·떨감 등을 제공하는 일, 행사에서 착석하는 순서 등 관련 의식과 의례는 만주와 몽골의 오랜 관계에서 형성된 관례에 기원을 두었다. 순치 연간이 제도화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단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입관 전 만몽관계에서 형성되고 변형된 관례와 규정들이 입관 이후 제도화의 자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 획기가 된 시기는 홍타이지의 시대였다.

V. 맺음말

승덕 원년 이후 외변몽고 封爵과 함께 儀仗과 조공 예물에 대한 초보적인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儀制들은 천총 연간 홍타이지가 反차하르 동맹 전선을 형성하고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해 승덕 연간에 관련 규정들이 정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규정들은 入

關 이후 순치 연간을 거쳐 제도적인 면모를 갖추기 시작해 건륭 연간에 완비된 제도로 정립되었다. 外藩蒙古의 朝覲과 朝貢, 그에 대한 宴賚와 償賜 제도도 이러한 장기간의 과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순치13년의 제도는 분명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 연원은 입관 전 만주와 몽골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관례와 정치적 상황에 의해 변화된 규정들에 있다.

누르하치 시기에 만주와 몽골이 대등한 관계에서 교환된 예물들은 이후 홍타이지가 내몽골을 ‘外藩蒙古’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進貢品으로 바뀌게 되었다. 누르하치가 몽골을 회유하기 위해 ‘더 많이 주었던’ 선물들은 서서히 만주 한-황제가 신하에 대한 은혜와 덕을 보이하고자 ‘더 많이 베푼’ 하사품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몽골 왕공들이 선물한 예물을 만주 한-황제가 수령하는가 아닌가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선물의 거절은 상위 권력자의 권리이기도 했다.

강희제가 외번몽고의 공물을 줄이면서 언급한 ‘不必多貢’은 외번에 대한 청 황제의 권위와 은혜를 보이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외번몽고의 진헌은 점차 상징적이고 의례적인 절차로 간소화되었고 이를 통해 청 황제의 시혜는 더욱 돋보이게 되었다. 청대에는 조공품에 대해 그 가치를 환산해 물품이나 銀으로 回賜하는 ‘折賞’이 시행되어 의례적 예물교환은 더욱 간결하게 되었고 외번 왕공은 청 황제에게 바치는 충성에 대한 대가를 챙길 수 있었다.

청 중후기에 몽골 왕공이 황제에게 선사하는 예물은 점차 경제적 가치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크게 되지만 후금-청 초기까지 몽골 부족들이 만주 황제에게 바치는 진공품에는 경제적 가치가 내재했다. 천총5년 경부터 만주의 한이 몽골 왕공들이 선사한 물품을 일부만 받거나 모두 돌려보내는 관례가 시작되었는데 대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고 당장 필요로 하는 비단과 의복, 보석 등의 물품들은 수령했다.

급속한 군사적 팽창으로 많은 인구들이 정권에 유입되면서 만주 종실

과 군공을 세운 자들뿐만 아니라 내몽골 왕공과 한인 투항자들에게 분배할 재화에 대한 수요도 급증했다. 특히 비단과 의복, 담배 등은 조선과 명을 통해 입수했으므로 만주 정권은 조선을 압박해 더 많은 공물을 요구하고 직접 교역이 어려워진 명의 물품은 對明교역을 유지한 몽골 부족들의 진공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들어왔다. 17세기 만주-몽골-조선-명의 물품들은 다양한 방식과 통로로 순환했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청대 조근연반제도의 기원이자 원형을 제공한 입관 전 시기 만주와 몽골의 예물교환에 주목했다. 청대 조근연반과 조공제도와 관련된 의례와 납공과 회사 방식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조근과 조공의 구분은 물론이고 年節에 행해지는 조근연반 의례와 제도를 보다 세부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償賜·回賜에 사용된 재화의 출처 즉 황실의 내탕인지 국고인지, 조정의 어느 부서에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입관 이후 외번몽고 조근·조공제도와 예물에 대해서는 후속 작업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2022.11.06. 투고 / 2022.12.05. 심사완료 / 2022.12.07. 게재확정)

[Abstract]

Gift of Khans, Bestowment by the Emperor:
Manchu and Mongol Relations and Gift Exchange in Early Qing

Lee, Sun Ae

In the course of Inner Mongolia being transformed into Mongolian nobles in the outer feudatories of the Qing empire (*Waifan menggu*) by Hong Taiji, the gifts exchange between the Manchu Khan and the Mongol princes on an equal footing during the Nurhachi period changed to tributary system. From the fifth year of Tiancong, the custom of asymmetrical gift exchange became prominent, while Hong Taiji generally accepted items of high economic value and immediate necessity such as silk, clothes, and jewelry. The goods obtained by the Manchu regime directly or indirectly from Ming and Joseon were redistributed to the Inner Mongol princes in the form of bestowment and trade. As such, the tributes presented by the Mongol tribes in the Later Jin the early Qing to the Manchu emperor had economic value, and the goods of Manchu, Mongol, Joseon, and Ming circulated in various ways and through numerous channels in the 17th century. The rudimentary regulations for tributes that were established after the first year of Chongde began to take on more developed institutional aspects during the reign of Shunzhi, and were established as a complete system during the reign of Qianlong. The annual visits and tributes by the Mongol nobles in the outer feudatories of the Qing empire, and the system of subsequent banquet ceremony

and bestowment as the emperor's reward were also established through this long-term process. The customs and regulations formed between Manchu and Mongol before the conquest of China in 1644 (or *ruguan qian*), became the origins of the system of annual visits and tributes by Mongol nobles in the Qing dynasty.

□ Keyword

gift exchange, Mongol nobles in the outer feudatories of the Qing empire (*Waifan menggu*), tribute, bestowment by the Manchu Emperor, annual visits by rotation

[참고문헌]

1. 사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만주실록 역주회, 『만주실록역주』, 소명출판, 2014.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 『만문노당역주』 太宗1~4, 소명출판, 2017.
- 김주원 외 역주, 『만문노당』 태조1,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 東洋文庫清代史研究室, 『內國史院檔 天聰七年』, 東洋文庫, 2003.
- 『大清滿洲實錄(manju i yargiyan kooli)』, 臺灣華文書局發行, 1964.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만주실록 역주회 역, 『만주실록역주』, 소명출판, 2014.
- 拉巴平獵 主編, 西藏歷史漢文文獻叢刊 編輯委員會, 『乾隆朝內府抄本《理藩院則例》』, 中國藏學出版社, 2006.
- 拉巴平措 主編, 西藏歷史漢文文獻叢刊 編輯委員會, 『欽定大清會典事例—理藩院』, 中國藏學出版社, 2006.
- 『滿文老檔』(tongki fuka sindaha hergen i dangse) 全7冊, 滿文老檔研究會 譯註, 東洋文庫, 1955~1963.
- 『朝鮮王朝實錄』(국사편찬위원회 DB, <https://sillok.history.go.kr>).
-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清朝前期理藩院滿蒙文題本』(全24冊), 內蒙古人民出版社, 2010.
- 『清實錄』, 中華書局 編, 中華書局, 1986(→ 국사편찬위원회 DB).
- 包文漢, 奇·朝克圖 整理, 『欽定外藩蒙古回部王公表傳』 第1輯, 內蒙古大學出版社, 1998.
- 希都日古 編譯, 『清內秘書院蒙古文檔案匯編漢譯』,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5.

2. 공구서

이 훈, 『만한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17.

3. 연구서

楠木賢道, 『清初對モンゴル政策史の研究』, 汲古書院, 2009.

達力扎布, 『明代漠南蒙古歷史研究』, 內蒙古文化出版社, 1998.

達力扎布, 『明清蒙古史論稿』, 民族出版社, 2003.

杜家驥, 『清代滿蒙聯姻關係』, 人民出版社, 2003.

마르셀 모스, 이상률 옮김·류정아 해제, 『증여론』, 한길사, 2016.

烏云畢力格, 『喀喇沁萬戶研究』, 內蒙古人民出版社, 2005.

李治國, 『清代藩部賓禮研究—以蒙古爲中心』, 內蒙古大學出版社, 2014.

張雙智, 『清代朝覲制度研究』, 學苑出版社, 2010.

Nicola Di Cosmo and Dalizhabu Bao, *Manchu-Mongol Relations on the Eve of The Qing Conquest*, Brill, 2003.

4. 논문

구범진, 「清 乾隆 연간 外藩 宴禮의 변화와 乾隆의 '盛世」, 『역사문화연구』 제68집, 2018.

김성수, 「17世紀初 滿蒙 關係와 內陸 아시아-만주-호르친·몽골 關係를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제82집, 2013.

達力扎布, 「清初內扎薩克旗的建立問題」, 『歷史研究』, 1998年 第1期.

達力扎布, 「清初外藩蒙古朝貢制度初探」, 『蒙元史暨民族史論集』,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蘇紅彥, 「清代蒙古王公年班制度對蒙古地區的影響」, 『陰山學刊』 第18卷 第6期, 2005.

蘇紅彥, 「試析清代蒙古王公年班的創立與發展」, 『內蒙古大學學報(人文

- 『社會科學版』第39卷 第2期, 2007.
- 蘇紅彥, 「清代蒙古王公年班的特點與作用」, 『內蒙古社會科學』第28卷 第1期, 2007.
- 宋 瞳, 「順治朝清廷宴賚蒙古王公制度略論」, 『西域歷史語言研究集刊』第7輯, 2014.
- 이선애, 「淸 初期 外藩(tulergi golo) 형성과정과 理藩院」,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4.
- 이선애, 「滿文史料를 통해 본 後金시기 滿·蒙 관계」, 『明清史研究』 제49집, 2018.
- 이선애, 「동맹의 代價에서 충성의 代價로」, 『東洋史學研究』 제156집, 2021.
- 임경준, 「담배 태우는 만주인들-청초 만주인의 담배문화와 烟禁令-」, 『明清史研究』 제55집, 2021.
- 張雙智·張羽新, 「論清代前後藏朝覲年班制度」, 『西藏研究』, 2009年 第5期.
- 陳昱彤, 「升平累治: 論清代西藏地方年班貢品的政治內涵」, 『中國藏學』 2022年 第2期.
- Dorothea Heuschert-Laage, "From Personal Network to Institution Building: The Lifanyuan, Gift Exchange and the Formalization of Manchu-Mongol Relations", *History and Anthropology*, Vol.25, No.5, 2014.
- Ning Chia, "The Lifanyuan and the Inner Asian Rituals in the Early Qing (1644-1795)", *Late Imperial China* Vol.14, NO.1, 1993.

